

공 개 용



# 2017년 상반기 건설공사 하도급 분야 감사 결과

2018 1.

##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

# 목 차

1. 감사 개요 .....	1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	2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3

# I . 감사실시 개요

## 1. 감사배경 및 목적

-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처리 및 전반적인 하도급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기여

##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 외 1건
- 감사기간 : 2017. 3. 30.~ 4. 12.(10일간)
- 감사인원 : 하도급감사팀장 외 3명
- 감사범위 : 민원처리 및 하도급 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

## 3. 감사중점

- 불법·불공정 하도급 시행 여부
-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적정 여부
- 저가 하도급 적정성 및 하도급 선금,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 불법·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 4. 지적사항 총괄

(단위 : 건, 천원, 명)

합 계			변상 (금액)	고발 (인원)	시정(금액)				주의 (인원)	개선	권고	통보	기타
총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소계	추징 (환수)	감액	시정요구					
24	20	0	0 (0)	3 (8)	2 (0)	0 (0)	0 (0)	2 (0)	10 (12)	0	0	9	0

## II.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

연번	처분요구 제목	처분유형	조치현황	비고
1	하도급계약 적정성검토 소홀	통보 주의요구	○ 재심결과에 따라 '벌점' 부과 조치완료	조치완료
2	안전관리자 운영 등 부적정	통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과태료부과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점검의뢰	조치완료
3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통보(고발)	○ 하수급인 행정처분 의뢰 ○ 하수급인, 재하수급인 고발조치	조치완료
4	건설공사대장 작성 소홀	시정요구 주의요구	○ 공사대장 작성 시정조치완료	조치완료
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통보 주의요구	○ 하수급인 행정처분요청	조치완료
6	공사감독자 지정·배치 부적정	시정요구 주의요구	○ 공사감독자의 교육수료를 통한 특급기술자인정 ('17.7.17)완료 ○ 공사감독자 신분상 '훈계' 조치완료	조치완료
7	안전관리계획 보완요구사항 미이행 및 승인 등 부적정	통보 주의요구	○ 상별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벌점부과 부결 : 경고조치 ('17.11.14)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검토완료 ('17.9.20,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불가통보) ○ 공사감독자 '훈계', '주의' 조치	조치완료
8	하도급계약 적정성검토 소홀	통보 주의요구	○ 지도교육실시('17.10.26) ○ 공사감독자 '주의' 조치	조치완료
9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및 현장 이탈	통보 주의요구	○ 고발조치('17.10.13) ○ 과태료부과('17.10.13) ○ 지도교육실시('17.10.26) ○ 공사감독자 '훈계' 조치	조치완료
10	설계변경 사항 미통보	주의요구	○ 지도교육실시('17.10.26) ○ 공사감독자 '주의' 조치	조치완료
11	무등록 건설기계 대여업	통보(고발) 주의요구	○ 고발조치('17.10.10) ○ 지도교육실시('17.10.26) ○ 공사감독자 '주의' 조치	조치완료
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통보 주의요구	○ 지도교육실시('17.10.26) ○ 행정처분통보('17.10.13) ○ 공사감독자 '주의' 조치	조치완료

#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2017년 (2017. 8.)	통보 주의요구	-	-	1	

제 목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소홀

## 【 지적내용 】

○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01. 12. 28. 'A사'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5. 12. 14. 'A사'가 이 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16. 1. 28. 보증이행사 'B사'(대표 갑)(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와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02. 12. 30. 'C사'(대표 을)와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기간 '02. 12. 31. ~ '19. 12. 31., 금액 9,359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2. 6.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기간 '16. 2. 6.~'16. 4. 30., 금액 3,949백만원)에 대하여 'D사'(대표 병)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과 같이 총 25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5-473호, '15.6.30, 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제83조(하도급의 적정성 검토)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 통지기간 등 준수,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지침 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제4항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인이 하도급 사항을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등록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수급인이 불법하도급하는 것을 인지 한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사관리관은 같은 지침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제12호 및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16년 3월부터 8월까지 수급인이 제출한 이견 공사의 하도급계약서에 대한 하도급 적정성을 3차례에 걸쳐 검토·처리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수급인이 보링·그라우팅<sup>1)</sup>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할 어스양카<sup>2)</sup> (지반천공 및 강선 조립, 그라우팅 등)공사를 포함하여 토공사<sup>3)</sup>업자에게 하도급을 부적정 하게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및 지적을 하지 아니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이 “적정”하다는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표 2]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현황

연번	실제공종	하도급 계약 내용	하도급자 건설업종	비 고
1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등	공사명 : 토공 및 구조물공사 (1,2구간) 계약자 : 'D사, 대표 병' 계약일 : '16.2.5. 계약금 : 3,949백만원 [※보링·그라우팅공종(어스양카공):169백만원]	토공사업 비계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무등록
2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등	공사명 : 지하차도 구조물공사(16~17블럭) 계약자 : 'D사, 대표 병' 계약일 : '16.6.24. 계약금 : 1,032백만원 [※보링·그라우팅공종(어스양카공):67백만원]	상하수도공사업 수중공사업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무등록
3	-토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등	공사명 : 가시설공사 계약자 : 'E사, 대표 정' 계약일 : '16.3.15. 계약금 : 322백만원 [※보링·그라우팅공종(어스양카공): 56백만원]	토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금속창호공사업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무등록

- 1)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전축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 2) 천공기를 이용하여 흙막이 벽 내부에서 배면을 향하여 소정의 길이로 천공을 하여 그 속에 PC 강선 또는 PC 강봉 등의 인장재를 삽입한 다음, 그 주위를 조강성 몰탈 등의 주입재로 정착시키고, 그리고 이 주입재가 경화한 후에 인장재를 긴장하여 흙막이 벽 띠장에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대사전, 2004. 5. 10., 도서출판 골드)
- 3)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그리고 공사관리관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급인의 하도급계약 내용을 부실하게 검토하여 보고한 기술검토의견서(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검토) 등 하도급 계약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 그 결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시공자격 검토를 소홀히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해당 전문건설업 등록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보링·그라우팅공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시공자격 검토 소홀 행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국토교통부 지침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추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의 부실추정)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등의 별점관리 기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발주자(공사관리관)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여부를 소홀히 검토한 행위는 국토교통부 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및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제12항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 조치할 사항 】

###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 소홀로 전문건설업등록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보링·그라우팅 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추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의 부실추정)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등의 별점관리 기준]에 따라 ‘별점’ 부과 조치하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수급인과 무등록 건설업자간 하도급 계약 체결에 대한 지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이 행정처분 등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의 공사관계자(수급인, 하수급인)들에게 철저히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다른 공사현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중인 모든 공사의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에게 지도·교육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제출한 하도급계약 검토보고서를 소홀히 검토한 공사관리관  
신분상 '주의' 조치



[붙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하도급 현황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D 사'	-	'16. 4. 30.	3,949	'16. 2. 6. ~ '16. 12. 31.	
2	'F 사'	-	'16. 4. 30.	3,047	'16. 3. 4. ~ '17. 4. 30.	
3	'E 사'	-	'16. 4. 30.	358	'16. 3. 16. ~ '16. 7. 31.	
4	'G 사'	-	'16. 3. 17.	920	'16. 3. 18. ~ '17. 12. 31.	
5	'H 사'	-	'16. 3. 31.	1,157	'16. 3. 4. ~ '16. 3. 31.	
6	'I 사'	-	'16. 5. 19.	387	'16. 4. 7. ~ '19. 11. 30.	
7	'J 사'	-	'16. 4. 25.	398	'16. 3. 29. ~ '16. 7. 31.	
8	'K 사'	-	'16. 5. 19.	785	'16. 3. 31. ~ '17. 3. 31.	
9	'L 사'	-	'16. 5. 19.	654	'16. 4. 5. ~ '19. 11. 30.	
10	'M 사'	-	'16. 7. 31.	918	'16. 4. 16. ~ '16. 8. 31	
11	'N 사'	-	'16. 5. 19.	15	'16. 4. 1. ~ '16. 5. 19.	
12	'O 사'	-	'16. 5. 19.	339	'16. 4. 22. ~ '18. 12. 31.	
13	'P 사'	-	'16. 5. 30.	863	'16. 4. 27. ~ '18. 6. 30.	
14	'Q 사'	-	'16. 5. 19.	11	'16. 4. 22. ~ '17. 12. 31	
15	'R 사'	-	'16. 5. 19.	123	'16. 4. 12. ~ '16. 7. 31.	
16	'S 사'	-	'16. 5. 19.	78	'16. 4. 20. ~ '16. 9. 30.	
17	'T 사'	-	'16. 7. 31.	880	'16. 3. 22. ~ '17. 3. 2.	
18	'D사'	-	'16. 6. 23.	1,032	'16. 6. 24. ~ '16. 9. 30.	
19	'U 사'	-	'16. 8. 29.	42	'16. 8. 30. ~ '16. 9. 30.	
20	'V 사'	-	'16. 9. 30.	456	'16. 4. 22. ~ '16. 12. 31.	
21	'W 사'	-	'16. 10. 20.	783	'16. 10. 21. ~ '19. 11. 30.	
22	'X 사'	-	'16. 12. 23.	42	'16. 12. 24. ~ '17. 3. 2	
23	'Y 사'	-	'16. 12. 23.	44	'16. 12. 24. ~ '17. 3. 2	
24	'Z 사'	-	'16. 12. 28.	270	'16. 5. 17. ~ '18. 5. 31.	
25	'a 사'	-	'16. 3. 31.	177	'16. 4. 1. ~ '16. 12. 31.	

No. 2

##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2017년 (2017. 8.)	통보	-	-	-	

**제 목**      **안전관리자 운영 부적정**

### 【 지적내용 】

○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01. 12. 28. 'A사'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5. 12. 14. 'A사'가 이 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16. 1. 28. 보증이행사 'B사'(대표 갑)(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02. 12. 30. 'C사'(대표 을)과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기간 '02. 12. 31. ~ '19. 12. 31., 금액 9,359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2. 6.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기간 '16. 2. 6.~'16. 4. 30., 금액 3,949백만원)에 대하여 'D사'(대표 병)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과 같이 총 25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① 안전관리자 운영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1항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및 제2항에 따르면 수급인은 공사비가 1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때 안전관리자의 수는 공사비가 800억원 이상인 경우 2명을 선임하고 700억원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여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 및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5-473호, '15.6.30., 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제95조(안전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에 대한 관련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수급인은 '16. 2. 1. 이 건 공사의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3명을 아래 [표 1]과 같이 고용노동부(안양고용노동지청장)에 선임·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표 1] 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경 현황

연번	성 명	자격증	선임 일자 (고용노동부 선임·신고)	선임기간	비고
1	'무'(당초)	산업안전기사	'16. 02. 01.	'16. 2. 1. ~ 2. 28.	-
	'기'(1차변경)	산업안전기사	'16. 03. 01.	'16. 3. 1. ~ 6. 30.	-
	'경'(2차변경)	건설안전기사	'16. 07. 01.	'16. 7. 1. ~ 현재	-
2	'신'	산업안전기사	'16. 02. 01.	'16. 2. 1. ~ 현재	다른 법령에 의한 업무 수행
3	'임'	건설안전기사	'16. 02. 15.	'16. 2. 15. ~ 현재	-

위 선임·신고된 안전관리자 3인중 1인('신')에게 '16년 3월부터 '17년 3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등)에서 정한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 수행토록 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2]와 같이 「철도안전법령」에서 정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sup>1)</sup>로서의 역할을 별도 수행토록 안전관리자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제2항에 따라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과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표 2] 안전관리자(‘신’)의 철도운행 안전관리 업무수행 현황(확인된 사항)

구 분	철도운행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 날짜	합 계(30일)
2016. 3월	3.17. / 3.18. / 3.19. / 3.21 / 3.22. / 3.23. / 3.24. 3.25. / 3.26. / 3.27. / 3.28. / 3.29. / 3.30. / 3.31.	14일
2016. 4월	4.1. / 4.4. / 4.5. / 4.6. / 4.7. / 4.8. / 4.9. / 4.10. 4.11. / 4.12. / 4.14. / 4.15.	12일
2016. 5월	5.4./ 5.8./ 5.9./ 5.21.	3일
2017. 3월	3.29.	1일

이때 수급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된 안전관리자의 3인 중 1인을 철도운행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동안에는 별도 부적정하게 운영한 철도운행안전관리업무 수행자(‘신’)를 제외한 안전관리자 2명(‘경’, ‘임’)에게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노임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 안전관리자 1인(전남택)을 제외한 안전관리자 노임 지급 내역(확인한 사항)

지 급 일	성 명	금 액 (원)	비 고
2016. 3. 25.	‘경’	8,131,59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신’ 안전 관리자의 급여가 제외 되어 있음
	‘임’	5,097,016	
2016. 4. 25.	‘경’	4,871,189	
	‘임’	3,072,786	
2016. 6. 25.	‘경’	4,871,189	
	‘임’	3,072,786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자를 부적정하게 운영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확인·시정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 그 결과 수급인이 안전관리자 1명이 부족한 2명으로 부적정하게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수급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공사장의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부적정 운영 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

관리자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감독업무 소홀 행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추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추정)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규정의 적용 대상에 각각 해당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제32조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제14-37호, '14.10.22)」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지침」 제95조(안전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및 산업안전관리비의 사용실적 확인 등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아래 [표 4] 와 같이 안전순찰 차량은 경유사용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차량에 맞지 않게 휘발유를 사용한 비용으로 부적정하게 지급처리 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소화기, 로프, 낙하물방지망을 구입하면서 검수사진만 있을 뿐 현장에 설치·배치 및 사용 여부 등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급인이 이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그에 따른 증빙자료를 갖추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확인·시정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지도·감독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표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부적정 및 증빙자료 미흡 사례

일 자	사 용 내 역	사용금액 (단위: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사용 부적정 및 증빙자료 미흡 사례
'16.5.11. '16.5.16.	안전순찰 차량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인데 휘발유를 유류대로 지급하였음	70,750 72,250	안전순찰차량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사용가능	<b>사용 부적정 혐의</b> - 순찰차량은 경유사용하나 휘발유를 유류대로 지급(대상 차량 확인 불가)
'16.10.20.	CCTV설치비 지급	1,960,000	근로자 감시시설 사용가능	<b>사용 부적정 혐의</b> - 근로자 감시가 아닌 공사장 전체 조망용
'16.11.9.	염화칼슘 구입	127,000	도로교통 통제용은 사용불가	<b>사용 근거자료 미흡</b> - 검수사진만 있음 <b>사용 부적정 혐의</b> - 사용위치가 작업장인지 도로인지 확인 불가함
'16.11.11.	로프 구입	484,000	안전시설비 사용가능	<b>사용 근거자료 미흡</b> - 검수사진만 있고 사용 여부 확인 불가 (현장 배치여부 확인 불가)
'16.11.7.	소화기 및 받침대 구입	198,600		
'16.11.17.	낙하물방지망 구입	220,000		
'16.12.25.	장비유도 신호수 인건비 지급	1,100,000	건설기계의 움직임으로부터 주변작업자를 보호하거나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인건비 가능	<b>사용 근거자료 미흡</b> <b>사용 부적정 혐의</b> -근로자 보호용은 가능하나 장비 신호수 비용 사용 불가(확인불가)

○ 그 결과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부적합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고 증빙자료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안전관리자 운영 부적정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및 같은 법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수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통보),

-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 수급인과 수급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등의 별점관리 기준]에 따라 각각 ‘별점’ 부과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통보)**

-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 부적정, 관련 증빙자료가 미흡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 확인,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업무의 지도·감독청인 고용노동부(안양고용노동지청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등 조치하기 바랍니다.(통보)

[붙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D 사'	-	'16. 4. 30.	3,949	'16. 2. 6. ~ '16. 12. 31.	
2	'F 사'	-	'16. 4. 30.	3,047	'16. 3. 4. ~ '17. 4. 30.	
3	'E 사'	-	'16. 4. 30.	358	'16. 3. 16. ~ '16. 7. 31.	
4	'G 사'	-	'16. 3. 17.	920	'16. 3. 18. ~ '17. 12. 31.	
5	'H 사'	-	'16. 3. 31.	1,157	'16. 3. 4. ~ '16. 3. 31.	
6	'I 사'	-	'16. 5. 19.	387	'16. 4. 7. ~ '19. 11. 30.	
7	'J 사'	-	'16. 4. 25.	398	'16. 3. 29. ~ '16. 7. 31.	
8	'K 사'	-	'16. 5. 19.	785	'16. 3. 31. ~ '17. 3. 31.	
9	'L 사'	-	'16. 5. 19.	654	'16. 4. 5. ~ '19. 11. 30.	
10	'M 사'	-	'16. 7. 31.	918	'16. 4. 16. ~ '16. 8. 31	
11	'N 사'	-	'16. 5. 19.	15	'16. 4. 1. ~ '16. 5. 19.	
12	'O 사'	-	'16. 5. 19.	339	'16. 4. 22. ~ '18. 12. 31.	
13	'P 사'	-	'16. 5. 30.	863	'16. 4. 27. ~ '18. 6. 30.	
14	'Q 사'	-	'16. 5. 19.	11	'16. 4. 22. ~ '17. 12. 31	
15	'R 사'	-	'16. 5. 19.	123	'16. 4. 12. ~ '16. 7. 31.	
16	'S 사'	-	'16. 5. 19.	78	'16. 4. 20. ~ '16. 9. 30.	
17	'T 사'	-	'16. 7. 31.	880	'16. 3. 22. ~ '17. 3. 2.	
18	'D사'	-	'16. 6. 23.	1,032	'16. 6. 24. ~ '16. 9. 30.	
19	'U 사'	-	'16. 8. 29.	42	'16. 8. 30. ~ '16. 9. 30.	
20	'V 사'	-	'16. 9. 30.	456	'16. 4. 22. ~ '16. 12. 31.	
21	'W 사'	-	'16. 10. 20.	783	'16. 10. 21. ~ '19. 11. 30.	
22	'X 사'	-	'16. 12. 23.	42	'16. 12. 24. ~ '17. 3. 2	
23	'Y 사'	-	'16. 12. 23.	44	'16. 12. 24. ~ '17. 3. 2	
24	'Z 사'	-	'16. 12. 28.	270	'16. 5. 17. ~ '18. 5. 31.	
25	'a 사'	-	'16. 3. 31.	177	'16. 4. 1. ~ '16. 12. 31.	



#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3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2017년 (2017. 8. )	통보	-	-	-	

제 목 |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 【 지적내용 】

○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01. 12. 28. 'A사'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5. 12. 14. 'A사가 이 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16. 1. 28. 보증이행사 'B사'(대표 갑)(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02. 12. 30. 'C사'(대표 을)과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기간 '02. 12. 31. ~ '19. 12. 31., 금액 9,359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2. 6.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기간 '16. 2. 6.~'16. 4. 30., 금액 3,949백만원)에 대하여 'D사'(대표 병)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과 같이 총 25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다시 하도급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르면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재하도급 요건의 각목을 충족하여 하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재하도급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 〉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필요하다는 서면승낙을 받을 것 (특허나 신기술 등)
-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과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관할 행정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을 못하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D사'(대표 '병', 이하 '하수급인' 이라 한다)은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기간 '16.2.6. ~ '16.12.31., 금액 3,949백만원)과 “지하차도 구조물”(기간 '16. 6. 24. ~ '16. 12.31., 금액 1,032백만원)공사(이 건 '하도급 공사' 라 한다)에 대하여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면서 이 건 하도급 공사 중 일부인 “가시설 공사와 구조물·배수공사”는 재하도급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다시 하도급(이하 '재하도급'이라 한다) 할 수 없는데도,

하수급인은 '16. 2. 29. 무등록 건설업자인 'E사'(대표 '정')에게 이 건 하도급 공사 중 가시설공사(쉬트파일, 천공, 향타, 어스양카 등)를 무단 재하도급(기간 '16. 2. 29. ~ '16. 7. 28.)하여 시행하였다.

이때 하수급인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E사'(대표 '정')에게 '16. 4. 8. 공사비 55백만원, '16. 4. 29. 87백만원, '16. 6. 10. 114백만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공사비 256백만원을 지급·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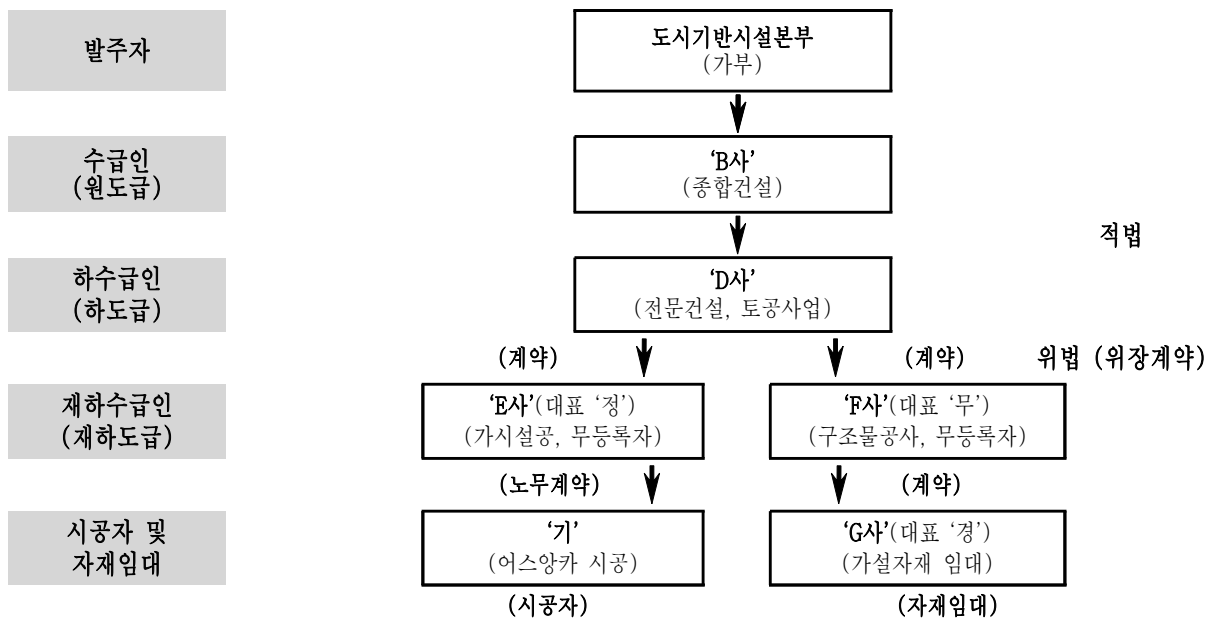
이 공사비 지급자료(송금확인증 ; 국민은행 발행증)는 수급인에게 자금 집행계획의 제출 건(문서번호 : 'D사' 2016 04-02호, 2016. 4. 8., 'D사' 201605-07호, 2016. 5. 13., 'D사' 201606-12호, 2016. 6. 13.)과 함께 붙임자료로 각각 제출된 사실도 확인된다.

- ※ '16. 12. 22.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무등록 업체인 'E사'(대표 '정')가 하수급인으로부터 공사비 관련 체불민원을 제기하였으며 하수급인에게 세금계산서 내역(254백만원)을 발행하여 재하도급 공사비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또한 하수급인은 '16. 2. 27. 이 건 하도급 공사 중 구조물·배수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건설업자인 'F사'(대표 '무')과 구조물·배수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계약(건설공사관리계약서, 기간 '16. 2. 27. ~ '16. 4. 30, 금액 854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이때 재하도급받은 무등록업자 'F사'(대표 '무')은 구조물·배수공사를 시행하면서 가설자재(유로폼, 파이프 등)를 'G사'로부터 임차사용 중 체불(16백만원)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사건 2017가144, 5부)에 대한 결정(유체 동산 처분금지 ; 건설자재, '17.4.3.)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불법 재하도급 흐름도



○ 이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 건 하도급공사를 하수급인이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업체('E사'(대표 '정'), 'F사'(대표 '무'))에게 재하도급한 사실을 당사자 상호간 이면 계약함에 따라 감사 당일 '17. 4. 5.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하수급인이 재하도급한 'E사'(대표 '정')에게 '16. 4. 8. 공사비 55백만원, '16. 4. 29. 87백만원, '16. 6. 10. 117백만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공사비 256백

만원을 지급·처리한 공사비 지급자료(송금확인증 ; 국민은행 발행증) 및 다른 재하도급을 한 'F사'(대표 '무')에게도 '16. 4. 8. 공사비 11백만원, '16. 4. 29. 85백만원, '16. 6. 10. 170백만원 등 3차례 걸쳐 총 공사비 266백만원을 지급·처리한 공사비 지급자료(송금확인증 ; 국민은행 발행증)를 수급인에게 자금 집행계획의 제출 건(문서번호: 'D사' 2016 04-02호, 2016. 4. 8., 'D사' 201605-07호, 2016. 5. 13., 'D사' 201606-12호, 2016. 6. 13.)과 함께 붙임자료로 각각 제출하여 접수한 사실('B사' 접수번호 154, 2016. 4. 8., 'B사' 접수번호 263, 2016. 5. 25. 등)등을 고려하면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사실을 수급인이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정당한 변명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하도급 계약서류와 시방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시공참여기술자의 소속여부, 대금지급내역, 체불내역 등의 확인이나 검토를 통해 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는데도 '16. 12. 22. 이와 관련된 체불 민원발생에 따른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조치하도록 지시(안전감사담당관-17276)를 받았음에도 대금지급내역 등을 확인·검토하지 아니하고 자재납품 업체로 보고하는 등 하도급 관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그 결과 하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함으로써 자재 및 장비 대금(5건, 28,280만원) 체불, 건설자재에 대한 유체동산 처분금지 결정, 생계와 직결되는 근로자(8명)의 노임체불(2,300만원)발생, 무등록업자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무등록업자 ['E사'(대표 '정')와 'F사'(대표 '무')]에게 재하도급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항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및 제96조(벌칙)의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그리고 재하수급인 ['E사'(대표 '정')와 'F사'(대표 '무')]의 무등록 건설업 행위는 같은 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96조(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또한 수급인의 재하도급 묵인 행위는 같은 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의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 대한 지도·점검 등 관리감독

소홀 행위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 6. 30.)의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와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의 관련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 조치할 사항 】

###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제3항을 위반한 하수급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같은 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 바랍니다.(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를 위반한 무등록업자 ‘E사’(대표 ‘정’)와 ‘F사’(대표 ‘무’)에 대하여 같은 법 제96조(벌칙) 제1호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기 바랍니다.(통보)
- 같은 법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3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조(과태료) 제6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 바랍니다.(통보)
- 하도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15-473호, '15. 6. 30.)의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와 제83조(하도급 적정성 검토)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및 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건설기술자에 대한 시정지시 등)에 따라 ‘주의’ 조치하기 바랍니다.(통보)

[붙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D 사'	-	'16. 4. 30.	3,949	'16. 2. 6. ~ '16. 12. 31.	
2	'F 사'	-	'16. 4. 30.	3,047	'16. 3. 4. ~ '17. 4. 30.	
3	'E 사'	-	'16. 4. 30.	358	'16. 3. 16. ~ '16. 7. 31.	
4	'G 사'	-	'16. 3. 17.	920	'16. 3. 18. ~ '17. 12. 31.	
5	'H 사'	-	'16. 3. 31.	1,157	'16. 3. 4. ~ '16. 3. 31.	
6	'I 사'	-	'16. 5. 19.	387	'16. 4. 7. ~ '19. 11. 30.	
7	'J 사'	-	'16. 4. 25.	398	'16. 3. 29. ~ '16. 7. 31.	
8	'K 사'	-	'16. 5. 19.	785	'16. 3. 31. ~ '17. 3. 31.	
9	'L 사'	-	'16. 5. 19.	654	'16. 4. 5. ~ '19. 11. 30.	
10	'M 사'	-	'16. 7. 31.	918	'16. 4. 16. ~ '16. 8. 31	
11	'N 사'	-	'16. 5. 19.	15	'16. 4. 1. ~ '16. 5. 19.	
12	'O 사'	-	'16. 5. 19.	339	'16. 4. 22. ~ '18. 12. 31.	
13	'P 사'	-	'16. 5. 30.	863	'16. 4. 27. ~ '18. 6. 30.	
14	'Q 사'	-	'16. 5. 19.	11	'16. 4. 22. ~ '17. 12. 31	
15	'R 사'	-	'16. 5. 19.	123	'16. 4. 12. ~ '16. 7. 31.	
16	'S 사'	-	'16. 5. 19.	78	'16. 4. 20. ~ '16. 9. 30.	
17	'T 사'	-	'16. 7. 31.	880	'16. 3. 22. ~ '17. 3. 2.	
18	'D사'	-	'16. 6. 23.	1,032	'16. 6. 24. ~ '16. 9. 30.	
19	'U 사'	-	'16. 8. 29.	42	'16. 8. 30. ~ '16. 9. 30.	
20	'V 사'	-	'16. 9. 30.	456	'16. 4. 22. ~ '16. 12. 31.	
21	'W 사'	-	'16. 10. 20.	783	'16. 10. 21. ~ '19. 11. 30.	
22	'X 사'	-	'16. 12. 23.	42	'16. 12. 24. ~ '17. 3. 2	
23	'Y 사'	-	'16. 12. 23.	44	'16. 12. 24. ~ '17. 3. 2	
24	'Z 사'	-	'16. 12. 28.	270	'16. 5. 17. ~ '18. 5. 31.	
25	'a 사'	-	'16. 3. 31.	177	'16. 4. 1. ~ '16. 12. 31.	

No. 4

##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2017년 (2017. 7. )	시정요구 주의요구	-	-	1	
제 목	건설공사대장 작성(기재사항 누락) 소홀					

### 【 지적내용 】

○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01. 12. 28. 'A사'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5. 12. 14. 'A사가 이 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16. 1. 28. 보증이행사 'B사'(대표 갑)(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02. 12. 30. 'C사'(대표 을)과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기간 '02. 12. 31. ~ '19. 12. 31., 금액 9,359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2. 6.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기간 '16. 2. 6.~'16. 4. 30., 금액 3,949백만원)에 대하여 'D사'(대표 병)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과 같이 총 25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르면 수급인·하수급인은 공사개요, 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행상황 등 해당 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기재사항 등)을 “건설공사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운영)”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국토교통부 지침, '16. 9.)에 따르면 발주자는 수급인·하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된 건설공사대장(기재사항 등) 통보기한의 준수 여부 및 통보내용의 정확 여부를 주기적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자(공사관리관)는 건설공사대장에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수정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수급인은 발주자(공사관리관)에게 이 건 공사에 관한 건설공사대장(기재사항 등)을 통보하면서 「붙임 2」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누락 현황'과 같이 하수급인의 공사 참여 기술자 28에 대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공란)하여 통보하였다.

그리고 발주자(공사관리관)는 「붙임 3」 건설공사대장 미확인 현황'과 같이 수급인이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한 하도급 변경사항 등 16건의 건설공사대장을 당일 '17. 3. 31. 까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그 결과 수급인의 공사 수행 관련 현장기술자의 이중배치 등 각종 위법사항에 대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주기적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건설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강화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수급인의 건설공사대장(기재사항 등) 작성 소홀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99조(과태료) 제3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발주자(공사관리관)의 건설공사대장(기재사항 등) 미확인 행위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5-473호, '15. 6. 30.)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누락(기술자 28명)한 수급인에 대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토록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기 바랍니다.(시정요구)

- 건설공사대장의 확인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공사장의 공사관리관 및 공사관계자에게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건설공사대장 확인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 신분상 '주의' 조치

[붙임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D 사'	-	'16. 4. 30.	3,949	'16. 2. 6. ~ '16. 12. 31.	
2	'F 사'	-	'16. 4. 30.	3,047	'16. 3. 4. ~ '17. 4. 30.	
3	'E 사'	-	'16. 4. 30.	358	'16. 3. 16. ~ '16. 7. 31.	
4	'G 사'	-	'16. 3. 17.	920	'16. 3. 18. ~ '17. 12. 31.	
5	'H 사'	-	'16. 3. 31.	1,157	'16. 3. 4. ~ '16. 3. 31.	
6	'I 사'	-	'16. 5. 19.	387	'16. 4. 7. ~ '19. 11. 30.	
7	'J 사'	-	'16. 4. 25.	398	'16. 3. 29. ~ '16. 7. 31.	
8	'K 사'	-	'16. 5. 19.	785	'16. 3. 31. ~ '17. 3. 31.	
9	'L 사'	-	'16. 5. 19.	654	'16. 4. 5. ~ '19. 11. 30.	
10	'M 사'	-	'16. 7. 31.	918	'16. 4. 16. ~ '16. 8. 31	
11	'N 사'	-	'16. 5. 19.	15	'16. 4. 1. ~ '16. 5. 19.	
12	'O 사'	-	'16. 5. 19.	339	'16. 4. 22. ~ '18. 12. 31.	
13	'P 사'	-	'16. 5. 30.	863	'16. 4. 27. ~ '18. 6. 30.	
14	'Q 사'	-	'16. 5. 19.	11	'16. 4. 22. ~ '17. 12. 31	
15	'R 사'	-	'16. 5. 19.	123	'16. 4. 12. ~ '16. 7. 31.	
16	'S 사'	-	'16. 5. 19.	78	'16. 4. 20. ~ '16. 9. 30.	
17	'T 사'	-	'16. 7. 31.	880	'16. 3. 22. ~ '17. 3. 2.	
18	'D사'	-	'16. 6. 23.	1,032	'16. 6. 24. ~ '16. 9. 30.	
19	'U 사'	-	'16. 8. 29.	42	'16. 8. 30. ~ '16. 9. 30.	
20	'V 사'	-	'16. 9. 30.	456	'16. 4. 22. ~ '16. 12. 31.	
21	'W 사'	-	'16. 10. 20.	783	'16. 10. 21. ~ '19. 11. 30.	
22	'X 사'	-	'16. 12. 23.	42	'16. 12. 24. ~ '17. 3. 2	
23	'Y 사'	-	'16. 12. 23.	44	'16. 12. 24. ~ '17. 3. 2	
24	'Z 사'	-	'16. 12. 28.	270	'16. 5. 17. ~ '18. 5. 31.	
25	'a 사'	-	'16. 3. 31.	177	'16. 4. 1. ~ '16. 12. 31.	

## [붙임 2]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누락 현황

연번	공사종류	업체명	공사기간	현장기술자	배치일	비고
1	토공	'A 사'	2016.3.3. ~ 2016.10.31.	-	2016. 3. 4.	
2	토공	'D 사'	2016.2.6. ~ 2016.12.31.	-	2016. 2. 6.	
3	가시설공	'B 사'	2016.3.4. ~ 2016.7.31.	-	2016. 3. 4.	
4	교량공	'C 사'	2016.3.4. ~ 2016.4.30.	-	2016. 3. 4.	
5	교량공	'E 사'	2016.3.18. ~ 2017.12.31.	-	2016. 3. 18.	
6	도로 및 포장공	'F 사'	2016.4.7. ~ 2019.11.30.	-	2016. 4. 7.	
7	방수공	'G 사'	2016.4.25. ~ 2016.12.31.	-	2016. 4. 25.	
8	교량공	'H 사'	2016.3.31. ~ 2017.1.31.	-	2016. 3. 31.	
9	교량공	'I 사'	2016.4.5. ~ 2017.1.31.	-	2016. 4. 5.	
10	토공	'J 사'	2016.3.22. ~ 2017.1.31.	-	2016. 3. 22.	
11	도로 및 포장공	'k 사'	2016.3.30. ~ 2017.12.31.	-	2016. 3. 30.	
12	토공	'L 사'	2016.4.16. ~ 2016.8.31.	-	2016. 4. 16.	
13	부대공	'M 사'	2016.4.1. ~ 2016.12.31.	-	2016. 4. 1.	
14	교량공	'N 사'	2016.4.1. ~ 2016.5.19.	-	2016. 4. 1.	
15	부대공	'O 사'	2016.5.17. ~ 2018.5.31.	-	2016. 5. 17.	
16	조경공	'P 사'	2016.4.22. ~ 2018.12.31.	-	2016. 4. 22.	
17	도로 및 포장공	'Q 사'	2016.4.27. ~ 2018.6.30.	-	2016. 4. 27.	
18	배수공	'R 사'	2016.4.22. ~ 2016.10.4.	-	2016. 4. 22.	
19	배수공	'S 사'	2016.4.22. ~ 2016.12.31.	-	2016. 4. 22.	
20	구조물공	'T 사'	2016.4.12. ~ 2016.8.31.	-	2016. 4. 12.	
21	구조물공	'U 사'	2016.4.20. ~ 2016.9.30.	-	2016. 4. 20.	
22	지하차도공	'V 사'	2016.6.24. ~ 2016.12.31.	-	2016. 6. 24.	
23	교량공	'W 사'	2016.5.31. ~ 2016.12.31.	-	2016. 5. 31.	
24	토공	'X 사'	2016.6.3. ~ 2017.5.31.	-	2016. 6. 3.	
25	구조물공	'Y 사'	2016.8.30. ~ 2016.9.30.	-	2016. 8. 30.	
26	하천공	'Z 사'	2016.10.21. ~ 2019.11.30.	-	2016. 10. 21.	
27	배수공	'a 사'	2016.12.24. ~ 2017.3.2.	-	2016. 12. 24.	
28	부대공	'b 사'	2016.12.23. ~ 2017.3.2.	-	2016. 12. 23.	

**[붙임 3] 건설공사대장(기재사항 등) 미확인 현황**

연번	통보내용	업체명	건설공사 통보일	발주기관 확인	비고
1	하도급 변경사항	'A 사'	2015. 2. 13.	미확인	
2	하도급 변경사항	'B 사'	2015. 3. 4.	미확인	
3	하도급 신규계약	'C 사'	2016. 4. 1.	미확인	
4	하도급 변경사항	'E 사'	2016. 4. 14.	미확인	
5	하도급 신규계약	'F 사'	2016. 5. 9.	미확인	
6	하도급 신규계약	'G 사'	2016. 5. 9.	미확인	
7	하도급 신규계약	'H 사'	2016. 6. 30.	미확인	
8	하도급 변경사항	'I 사'	2016. 6. 30.	미확인	
9	하도급 변경사항	'J 사'	2016. 8. 24.	미확인	
10	하도급 변경사항	'k 사'	2016. 10. 27.	미확인	
11	하도급 변경사항	'L 사'	2015. 12. 11.	미확인	
12	하도급 변경사항	'M 사'	2017. 1. 17.	미확인	
13	하도급 변경사항	'N 사'	2017. 2. 7.	미확인	
14	하도급 변경사항	'O 사'	2017. 3. 3.	미확인	
15	하도급 변경사항	'P 사'	2017. 3. 16.	미확인	
16	하도급 신규계약	'Q 사'	2017. 3. 23.	미확인	

No. 5

# 감사결과 처분요구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액		
도시기반시설본부 (가부)	2017년 (2017. 8. )	통보 주의요구	-	-	1	

제 목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 지적내용 】

○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01. 12. 28. 'A사'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5. 12. 14. 'A사'가 이 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16. 1. 28. 보증이행사 'B사'(대표 갑)(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02. 12. 30. 'C사'(대표 을)과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기간 '02. 12. 31. ~ '19. 12. 31., 금액 9,359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2. 6.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기간 '16. 2. 6.~'16. 4. 30., 금액 3,949백만원)에 대하여 'D사'(대표 병)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과 같이 총 25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2항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들 중 'E사'(대표 '정') 및 'F사'(대표 '무') 등 2개 업체는 하도급 공사 중 건설기계 임대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사용하면서 「붙임 2」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현황'과 같이 굴삭기 등 건설기계 14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16. 11. ~ '17. 2. 기간 동안 부적정하게 임차 사용하였다.

또한 발주자(공사관리관)는 하수급인과 건설기계임대업자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 당일 '17. 4. 4. 까지 확인하지 아니 하였다.

○ 그 결과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발생 및 그에 따른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의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 제1항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발주자(공사관리관)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미확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5 - 473호. '15.6.30))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규정 등에 위반된 것이다.

## ②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교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과 제6항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업자가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대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등(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하수급인 'F사'(대표 '무')은 토공사 하도급공사 중 건설기계 임대업자들로 부터 건설기계를 '16. 12. 1. ~ '16. 12. 31. 임차하면서 '[붙임 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교부) 현황'과 같이 건설기계 1건에 대한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교부하지 아니하고 임차기간 동안 건설기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발주자(공사관리관)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감사 당일 '17. 4. 4. 까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그 결과 하수급인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및 그에 따른 건설 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 받지 못할 우려를 초래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8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발주자(공사관리관)의 보증서 교부 여부 미확인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5 - 473호. '15.6.30)]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하수급인 'E사'(대표 '정') 및 'F사'(대표 '무') 2개 업체에 대하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교육 등 계도하여 주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와 건설기계대여 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미체결에 대한 지적으로 계약대상자(당사자)들이 과태료 부과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 공사장의 공사관계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들에게도 철저히 지도·교육하기 바랍니다.

(통보)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미교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하수급인 'F사'(대표 '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8호,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통보)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교부 확인 등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진행 중인 공사의 공사관리관 및 공사관계자에게 관련법령을 지도·교육하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미확인 등 업무 소홀 공사관리관 신분상 '주의' 조치



[붙임 1]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D 사'	-	'16. 4. 30.	3,949	'16. 2. 6. ~ '16. 12. 31.	
2	'F 사'	-	'16. 4. 30.	3,047	'16. 3. 4. ~ '17. 4. 30.	
3	'E 사'	-	'16. 4. 30.	358	'16. 3. 16. ~ '16. 7. 31.	
4	'G 사'	-	'16. 3. 17.	920	'16. 3. 18. ~ '17. 12. 31.	
5	'H 사'	-	'16. 3. 31.	1,157	'16. 3. 4. ~ '16. 3. 31.	
6	'I 사'	-	'16. 5. 19.	387	'16. 4. 7. ~ '19. 11. 30.	
7	'J 사'	-	'16. 4. 25.	398	'16. 3. 29. ~ '16. 7. 31.	
8	'K 사'	-	'16. 5. 19.	785	'16. 3. 31. ~ '17. 3. 31.	
9	'L 사'	-	'16. 5. 19.	654	'16. 4. 5. ~ '19. 11. 30.	
10	'M 사'	-	'16. 7. 31.	918	'16. 4. 16. ~ '16. 8. 31	
11	'N 사'	-	'16. 5. 19.	15	'16. 4. 1. ~ '16. 5. 19.	
12	'O 사'	-	'16. 5. 19.	339	'16. 4. 22. ~ '18. 12. 31.	
13	'P 사'	-	'16. 5. 30.	863	'16. 4. 27. ~ '18. 6. 30.	
14	'Q 사'	-	'16. 5. 19.	11	'16. 4. 22. ~ '17. 12. 31	
15	'R 사'	-	'16. 5. 19.	123	'16. 4. 12. ~ '16. 7. 31.	
16	'S 사'	-	'16. 5. 19.	78	'16. 4. 20. ~ '16. 9. 30.	
17	'T 사'	-	'16. 7. 31.	880	'16. 3. 22. ~ '17. 3. 2.	
18	'D사'	-	'16. 6. 23.	1,032	'16. 6. 24. ~ '16. 9. 30.	
19	'U 사'	-	'16. 8. 29.	42	'16. 8. 30. ~ '16. 9. 30.	
20	'V 사'	-	'16. 9. 30.	456	'16. 4. 22. ~ '16. 12. 31.	
21	'W 사'	-	'16. 10. 20.	783	'16. 10. 21. ~ '19. 11. 30.	
22	'X 사'	-	'16. 12. 23.	42	'16. 12. 24. ~ '17. 3. 2	
23	'Y 사'	-	'16. 12. 23.	44	'16. 12. 24. ~ '17. 3. 2	
24	'Z 사'	-	'16. 12. 28.	270	'16. 5. 17. ~ '18. 5. 31.	
25	'a 사'	-	'16. 3. 31.	177	'16. 4. 1. ~ '16. 12. 31.	

**[붙임 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현황**

연번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건설업자	대여업자	임차기간	대여금액 (단위:천원)
1	굴삭기	서울02차8987	'E 사'	쌍용건설중기	16.12	9,856
2	굴삭기	서울02타7516, 서울02하6606	'F 사'	신세계건기 김재욱	16.12.1~12.31	20,900
3	굴삭기	서울02하5278	'E 사'	OS오성중기	16.12.06	825
4	굴삭기	서울03나6997	'E 사'	민성중기	16.11.30~11.31	880
5	굴삭기	경기02거6688	'E 사'	부강건설중기	16.12.15	495
6	지게차	서울04다5065	'E 사'	서해건기	16.12월 중 3일	165
7	굴삭기	서울02하7594	'E 사'	에펠건설개발㈜	16.12.05	495
8	굴삭기	서울02거5780	'E 사'	진흥건기	16.12.09	495
9	굴삭기	서울02파6589	'E 사'	선봉기계건설	16.12.27~12.29	1,485
10	굴삭기	서울02하7866	'E 사'	에펠건설개발㈜	17.01.04	495
11	덤프	서울06아8960	'E 사'	동성중기	17.02.07	418
12	덤프	서울06아8317	'E 사'	영복산업중기	17.02	418
13	덤프	서울06아8180	'E 사'	청양종합중기	17.02.13	1,243
14	덤프	서울06파7710	'E 사'	현서중기	17.02.07	418

**[붙임 3]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교부) 현황**

연번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건설업자	대여업자	임차기간	계약금액 (단위:천원/일)	대여금액 (단위:천원)
1	굴삭기	서울02타7516, 서울02하6606	'F 사'	신세계건기	16.12.1~12.3 1	550	20,900

#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6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2017년 (2017. 7.)	시정요구 주의요구	-	-	3	

제 목 공사감독자 지정·배치 부적정

## 【 지적내용 】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4. 8. 25. 'A사'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위례 지구A1-10BL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11. 24.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기간 '16. 11. 24.~'17. 8. 8., 금액 2,621백만원)에 대하여 'B사' (대표 '을')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 과 같이 총 36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발주자의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공사의 소속 직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건 공사와 같이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에 따라 특급기술자(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장에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를 지정·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발주자는 이 건 공사 건설사업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로 지정·배치하면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특급기술자를 지정·배치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 와 같이 기술등급이 미달한 고급기술자를 공사감독자로 부적절하게 지정·배치하였다.

[표] 공사감독자의 지정·배치현황

감독 업무분야	직 위(직급)	성 명	감독 수행기간	기술등급(분야)
건설공사 총괄감독자	공사감독자(건축 3급)	‘병’	착공 시 ~ '14.12.31.	고급기술자(건축)
	공사감독자(건축 3급)	‘정’	'15. 1. 1. ~ '16.12.31.	고급기술자(건축)
	공사감독자(건축 3급)	‘무’	'16. 1. 1. ~ 현재	고급기술자(건축)

- 그 결과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를 배치기준에 부적절하게 지정·배치함으로써 이 건 공사의 안전·품질관리 등 제반 건설사업관리(감독)업무 소홀과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발주자의 공사감독자 지정·배치 부적절 행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등의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및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감독자 지정·배치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 조치할 사항 】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 기준 등) 규정 등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에 적합하게 공사감독자를 변경·배치하시고, **(시정요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에 부적합하게 공사감독자를 지정·배치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요구)**

### ※ 신분상 조치

- 공사감독자 지정·배치 업무 소홀 부서장 신분상 ‘훈계’ 조치

[붙임] 위례지구A1-10BL 아파트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C 사'	-	'14. 11. 24.	2,621	'14. 11. 24. ~ '17. 8. 8.	
2	'D 사'	-	'14. 12. 29.	1,604	'14. 12. 29. ~ '17. 8. 8.	
3	'E 사'	-	'15. 3. 12.	16,671	'15. 3. 12. ~ '17. 8. 8.	
4	'F 사'	-	'15. 3. 12.	19,340	'15. 3. 12. ~ '17. 8. 8.	
5	'G 사'	-	'15. 3. 12.	8,634	'15. 3. 12. ~ '17. 8. 8.	
6	'H 사'	-	'15. 4. 8.	7,584	'15. 4. 8. ~ '17. 8. 8.	
7	'I 사'	-	'15. 4. 8.	7,491	'15. 4. 8. ~ '17. 8. 8.	
8	'J 사'	-	'15. 4. 23.	370	'15. 4. 23. ~ '17. 8. 8.	
9	'K 사'	-	'15. 7. 17.	1,500	'15. 7. 17. ~ '17. 8. 8.	
10	'L 사'	-	'15. 7. 24.	747	'15. 7. 24. ~ '17. 8. 8.	
11	'M 사'	-	'15. 8. 20.	702	'15. 8. 20. ~ '17. 8. 8.	
12	'N 사'	-	'15. 8. 20.	644	'15. 8. 20. ~ '17. 8. 8.	
13	'O 사'	-	'15. 9. 7.	675	'15. 9. 7. ~ '17. 8. 8.	
14	'P 사'	-	'15. 9. 25.	404	'15. 9. 25. ~ '17. 8. 8.	
15	'Q 사'	-	'15. 11. 9.	372	'15. 11. 9. ~ '17. 8. 8.	
16	'R 사'	-	'15. 11. 9.	570	'15. 11. 9. ~ '17. 8. 8.	
17	'S 사'	-	'15. 11. 9.	1,671	'15. 11. 9. ~ '17. 8. 8.	
18	'T 사'	-	'15. 11. 30.	1,598	'15. 11. 30. ~ '17. 8. 8.	
19	'U 사'	-	'15. 12. 14.	4,210	'15. 12. 14. ~ '17. 8. 8.	
20	'V 사'	-	'16. 3. 14.	843	'16. 3. 14. ~ '17. 8. 8.	
21	'W 사'	-	'16. 3. 10.	2,746	'16. 3. 10. ~ '17. 8. 8.	
22	'X 사'	-	'16. 3. 30.	2,646	'16. 3. 30. ~ '17. 8. 8.	
23	'Y 사'	-	'16. 3. 30.	3,827	'16. 3. 30. ~ '17. 8. 8.	
24	'Z 사'	-	'16. 4. 14.	443	'16. 4. 14. ~ '17. 8. 8.	
25	'a 사'	-	'16. 4. 14.	4,592	'16. 4. 14. ~ '17. 8. 8.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26	'b 사'	-	'16. 4. 20.	964	'16. 4. 20. ~ 17. 8. 8.	
27	'c 사'	-	'16. 4. 20.	1,471	'16. 4. 20. ~ 17. 8. 8.	
28	'd 사'	-	'16. 4. 20.	1,062	'16. 4. 20. ~ 17. 8. 8.	
29	'e 사'	-	'16. 5. 11.	1,499	'16. 5. 11. ~ 17. 8. 8.	
30	'f 사'	-	'16. 6. 7.	960	'16. 6. 7. ~ 17. 8. 8.	
31	'g 사'	-	'16. 6. 14.	432	'16. 6. 14. ~ 17. 8. 8.	
32	'h 사'	-	'16. 8. 10.	555	'16. 8. 10. ~ 17. 8. 8.	
33	'I 사'	-	'16. 8. 10.	1,266	'16. 8. 10. ~ 17. 8. 8.	
34	'j 사'	-	'17. 2. 9.	441	'17. 2. 9. ~ 17. 8. 8.	
35	'k 사'	-	'17. 2. 13.	1,504	'17. 2. 13. ~ 17. 8. 8.	
36	'l 사'	-	'17. 2. 13.	883	'17. 2. 13. ~ 17. 8. 8.	

#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7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2017년 (2017. 7.)	통보 주의요구	-	-	4	

**제 목**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및 승인 등 부적정

**【 지적내용 】**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4. 8. 25. 'A사'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위례지구A1-10BL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11. 24.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기간 '16. 11. 24.~'17. 8. 8., 금액 2,621백만원)에 대하여 'B사' (대표 '을')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 과 같이 총 36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및 승인 부적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 및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15 - 473호, '15.6.30, 이하 “국토교통부 지침”이라 한다), (구)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44조(안전관리)]」 제10조(발주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 등의 기본 임무) 및 제151조(안전관리)에 따르면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공사, 향타기 및 천공기를 사용하는 공사,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가설구조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수급인으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전에 제출받아 15일(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 검토 의뢰 경우 2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수급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사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수급인은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수급인은 이 건 공사를 착공하면서 '14.11.10.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15.2.12. 공사감독자로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에게 동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의뢰하여 받은 검토결과(조건부 적정) 및 그에 따른 흠막이 안전성계산서, 시추주상도 추가 필요사항(안전성계산서에는 검토기관 또는 기술사의 날인 포함) 등을 아래 [표 1] 과 같이 이행하도록 보완 요구내용을 통보 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당일 '17. 4. 7. 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동 안전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이 건 공사 중 흠막이 공사를 부적정하게 시행하여 완료하였다.

[표 1]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검토결과(조건부 적정) 보완 요구내용 (미보완 사항)

보완 요구내용 (서울주택도시공사 → 수급인에게 '15. 2. 12. 보완 요청)	비 고
○ 흠막이 안전성계산서, 시추주상도 추가 필요 ※ 안전성계산서에는 검토기관 또는 기술사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함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해당 공사 완료
○ 흠막이와 관련된 흠막이 벽, 말뚝, 흠막이 판, 띠장, 버팀보, 복공판 등의 시공 방법 및 순서 등이 표시된 시공 상세도면 보완 필요	
○ 흠막이 가시설에 대한 해체의 안전시공 절차와 해체계획수립의 보완 필요 가. 가시설물 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나.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 다음과 같은 붕괴재해 위험분석 보완 필요 가. 붕괴위험 장소, 형태, 수량 등을 파악하여 목록작성 나. 붕괴 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제시 다. 붕괴 위험장소를 평면도, 종·횡단면도 등 도면상에 표기	
○ 굴착지 내의 지하수 및 용수처리 대책 추가 보완	

이때 수급인이 이 건 공사 중 흠막이 공사를 하면서 '15.1.21. 흠막이시설의

변형 등을 측정하기 위한 하중계를 설치하고 '15.2.13. 지중경사계 및 지하수위계를 설치하여 흠막이시설 변형에 대한 계측 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수급인은 이 건 공사의 흠막이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보건관리자와 건설안전위원회의 조직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실제 운영하지 않는 등 아래 [표 2] 와 같이 흠막이 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공사장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사실도 확인된다

[표 2] 안전관리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한 사례

구 분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관리계획의 사례
흠막이계획서	흠막이 계획서의 조직도에는 보건관리자와 건설안전위원회가 있으나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음 흠막이 안전관리계획은 현장여건이 반영된 구체적 위험요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나 흠막이 작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음
안전관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중 안전관리비 중 흠막이 계획비용이 미반영 되었으며, 공종별 안전관리 대책 수립과정에서는 흠막이 안전성 및 지보공의 안전성, 굴착저면의 안전성, 흠막이 철거에 대한 안전성, 굴착에 따른 주변지반과 구조물에 대한 영향성 검토와 시공 상세도면이 제시 되지 않았음

반면에 '15. 8. 27.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결과 및 그에 따른 보완 요구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보완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인에게 이 건 공사의 안전 관리계획을 부적정하게 승인 통보하였다.

- 그 결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및 동 계획의 승인없이 이 건 공사의 흠막이 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발주자(공사감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부적정 승인 통보함으로써 공사장의 안전관리 소홀 및 부실 공사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수급인의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및 승인 없이 공사완료 행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7항 및 「국토교통부 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제3항 등에 위반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제5항(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별점관리기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발주자(공사감독자)의 안전관리계획서 부적정 승인 행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국토교통부 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제 10조(발주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업무) 제3항, 제151조(안전관리) 등에 위반된 것으로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부적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제32조의3(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제2014-37호, '14.10.22)」에 따르면 건설업 등을 하는 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지침 제151조(안전관리) 및 제152조(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에 따르면 발주자(공사감독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보완토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매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기타 필요한 서류 등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면서 아래 [표 3] 과 같이 장비신호수의 인건비는 사용 불가한데도 근로자 보호용의 비용으로 부적합하게 지급 처리하였으며, 그리고 건강관리비를 사용하면서 거래명세서와 증빙사진은 있으나 거래명세서에 세부적인 구입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지급 처리하였다.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안전관리비를 부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사용결과에 따른 증빙자료를 갖추지 아니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시정 조치를 하지 아니 하는 등 지도·감독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부적정 및 증빙자료 미흡 사례

일 자	사 용 내 역	사용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및 증빙자료
-----	---------	------	-----------	---------------

		(단위 : 원)	사용기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미흡 사례
'16.10.	장비신호수 인건비(10일분)	1,000,000	건설기계의 움직임으로부터 주변작업자를 보호하거나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인건비 사용가능	<b>사용 부적정 혐의</b> -근로자 보호용은 가능하나 장비 신호수 비용 사용 불가(확인불가) <b>사용 근거자료 미흡</b>
'17. 1.	건강관리비	225,000	사용명세서는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	<b>사용 근거자료 미흡</b> - 거래명세서와 증빙사진은 있으나 거래명세서에 세부적인 구입 내역이 없음
'17. 2.	추락방지망 10,587㎡	47,641,000	안전시설비 등 사용가능	<b>사용 근거자료 미흡</b> - 추락방지망에 대한 표준품셈이 없으므로 안전시설물 입찰견적 기준단가로 처리함

○ 그 결과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부적합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고, 증빙자료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게 되었다

발주자(공사감독자)의 산업안전관리 집행 적정여부 미확인 행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국토교통부 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및 제10조(발주청,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제2항 및 제151조(안전관리)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 안전관리계획서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및 승인 없이 공사시행 완료 등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7항 및 「국토교통부 지침」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임무) 제3항 등을 위반한 수급인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의 부실추정)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의 부실추정)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등의 별점관리 기준]에 따라 ‘별점’ 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부적합 및 증빙자료가 미비한데도 이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 업무의 지도·감독관청인 고용노동부(서울 동부고용노동지청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등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안전관리계획서 부적정 승인 등 소홀한 공사감독자(‘병’, ‘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한 공사감독자(‘무’, ‘기’)에게는 각각 신분상 ‘훈계’,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안전관리계획 부적정 승인 공사감독자(‘병’, ‘정’) 신분상 ‘훈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등 감독 소홀 공사감독자(‘무’, ‘기’) 신분상 ‘주의’ 조치

[붙임] 위례지구A1-10BL 아파트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C 사'	-	'14. 11. 24.	2,621	'14. 11. 24. ~ '17. 8. 8.	
2	'D 사'	-	'14. 12. 29.	1,604	'14. 12. 29. ~ '17. 8. 8.	
3	'E 사'	-	'15. 3. 12.	16,671	'15. 3. 12. ~ '17. 8. 8.	
4	'F 사'	-	'15. 3. 12.	19,340	'15. 3. 12. ~ '17. 8. 8.	
5	'G 사'	-	'15. 3. 12.	8,634	'15. 3. 12. ~ '17. 8. 8.	
6	'H 사'	-	'15. 4. 8.	7,584	'15. 4. 8. ~ '17. 8. 8.	
7	'I 사'	-	'15. 4. 8.	7,491	'15. 4. 8. ~ '17. 8. 8.	
8	'J 사'	-	'15. 4. 23.	370	'15. 4. 23. ~ '17. 8. 8.	
9	'K 사'	-	'15. 7. 17.	1,500	'15. 7. 17. ~ '17. 8. 8.	
10	'L 사'	-	'15. 7. 24.	747	'15. 7. 24. ~ '17. 8. 8.	
11	'M 사'	-	'15. 8. 20.	702	'15. 8. 20. ~ '17. 8. 8.	
12	'N 사'	-	'15. 8. 20.	644	'15. 8. 20. ~ '17. 8. 8.	
13	'O 사'	-	'15. 9. 7.	675	'15. 9. 7. ~ '17. 8. 8.	
14	'P 사'	-	'15. 9. 25.	404	'15. 9. 25. ~ '17. 8. 8.	
15	'Q 사'	-	'15. 11. 9.	372	'15. 11. 9. ~ '17. 8. 8.	
16	'R 사'	-	'15. 11. 9.	570	'15. 11. 9. ~ '17. 8. 8.	
17	'S 사'	-	'15. 11. 9.	1,671	'15. 11. 9. ~ '17. 8. 8.	
18	'T 사'	-	'15. 11. 30.	1,598	'15. 11. 30. ~ '17. 8. 8.	
19	'U 사'	-	'15. 12. 14.	4,210	'15. 12. 14. ~ '17. 8. 8.	
20	'V 사'	-	'16. 3. 14.	843	'16. 3. 14. ~ '17. 8. 8.	
21	'W 사'	-	'16. 3. 10.	2,746	'16. 3. 10. ~ '17. 8. 8.	
22	'X 사'	-	'16. 3. 30.	2,646	'16. 3. 30. ~ '17. 8. 8.	
23	'Y 사'	-	'16. 3. 30.	3,827	'16. 3. 30. ~ '17. 8. 8.	
24	'Z 사'	-	'16. 4. 14.	443	'16. 4. 14. ~ '17. 8. 8.	
25	'a 사'	-	'16. 4. 14.	4,592	'16. 4. 14. ~ '17. 8. 8.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26	'b 사'	-	'16. 4. 20.	964	'16. 4. 20. ~ 17. 8. 8.	
27	'c 사'	-	'16. 4. 20.	1,471	'16. 4. 20. ~ 17. 8. 8.	
28	'd 사'	-	'16. 4. 20.	1,062	'16. 4. 20. ~ 17. 8. 8.	
29	'e 사'	-	'16. 5. 11.	1,499	'16. 5. 11. ~ 17. 8. 8.	
30	'f 사'	-	'16. 6. 7.	960	'16. 6. 7. ~ 17. 8. 8.	
31	'g 사'	-	'16. 6. 14.	432	'16. 6. 14. ~ 17. 8. 8.	
32	'h 사'	-	'16. 8. 10.	555	'16. 8. 10. ~ 17. 8. 8.	
33	'I 사'	-	'16. 8. 10.	1,266	'16. 8. 10. ~ 17. 8. 8.	
34	'j 사'	-	'17. 2. 9.	441	'17. 2. 9. ~ 17. 8. 8.	
35	'k 사'	-	'17. 2. 13.	1,504	'17. 2. 13. ~ 17. 8. 8.	
36	'l 사'	-	'17. 2. 13.	883	'17. 2. 13. ~ 17. 8. 8.	

#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8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2017년 (2017. 7.)	통보 주의요구	-	-	2	
제 목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 소홀					

## 【 지적내용 】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4. 8. 25. 'A사'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위례 지구A1-10BL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11. 24.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기간 '16. 11. 24.~'17. 8. 8., 금액 2,621백만원)에 대하여 'B사' (대표 '을')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 과 같이 총 36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15-473호, '15.6.30, 이하 "국토교통부 지침") 제129조(하도급 관련사항, 구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22조)에 따르면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게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검토,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등, 저가 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수급인(현장대리인)이 '14. 12. 23. 제출한 하도급 계약서와 공사내역서 등에 아래 [표]와 같이 수급인이 보링·그라우팅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할 어스양카(지반천공 및 강선조립, 그라우팅 등)공사를 포함하여 토공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부적정하게 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 및 지적을 하지 아니



하여 무등록업자인 토공사업자로 하여금 보링·그라우팅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표]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 현황**

실제공종	공사내용 (건축규모)	하도급 계약 내용	하도급자 건설업종	비 고
토공사 및 보링·그라우팅 공사	공동주택 23개동, 21층 2,200세대	계약명 : 토공사 및 가시설공사 계약자 : 'C사' 대표 '병' 계약일 : '14. 11.24. 계약금 : 2,621백만원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무등록

○ 그 결과 발주자(공사감독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시공자격 검토를 소홀히하여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에 따른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보링·그라우팅 공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발주자(공사감독자)의 하수급인에 대한 시공자격 검토 소홀 행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제129조(하도급 관련사항)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 다른 공사현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중인 모든 공사의 공사감독자 등에게 지도·교육하시기 바람

특히 앞으로 수급인과 무등록 건설업자간 하도급 계약 체결에 대한 지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이 행정처분 등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의 공사관계자(수급인, 하수급인)들에게도 철저히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 소홀로 전문건설업등록이 없는 자로 하여금 보링·그라우팅 공사를 수행하게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를 초래한 공사감독자에 대하여 신분상 '훈계'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공사감독 업무 소홀 공사감독자(행위자, 1차 감독자) 신분상 '훈계', '주의' 조치

[붙임] 위례지구A1-10BL 아파트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C 사'	-	'14. 11. 24.	2,621	'14. 11. 24. ~ '17. 8. 8.	
2	'D 사'	-	'14. 12. 29.	1,604	'14. 12. 29. ~ '17. 8. 8.	
3	'E 사'	-	'15. 3. 12.	16,671	'15. 3. 12. ~ '17. 8. 8.	
4	'F 사'	-	'15. 3. 12.	19,340	'15. 3. 12. ~ '17. 8. 8.	
5	'G 사'	-	'15. 3. 12.	8,634	'15. 3. 12. ~ '17. 8. 8.	
6	'H 사'	-	'15. 4. 8.	7,584	'15. 4. 8. ~ '17. 8. 8.	
7	'I 사'	-	'15. 4. 8.	7,491	'15. 4. 8. ~ '17. 8. 8.	
8	'J 사'	-	'15. 4. 23.	370	'15. 4. 23. ~ '17. 8. 8.	
9	'K 사'	-	'15. 7. 17.	1,500	'15. 7. 17. ~ '17. 8. 8.	
10	'L 사'	-	'15. 7. 24.	747	'15. 7. 24. ~ '17. 8. 8.	
11	'M 사'	-	'15. 8. 20.	702	'15. 8. 20. ~ '17. 8. 8.	
12	'N 사'	-	'15. 8. 20.	644	'15. 8. 20. ~ '17. 8. 8.	
13	'O 사'	-	'15. 9. 7.	675	'15. 9. 7. ~ '17. 8. 8.	
14	'P 사'	-	'15. 9. 25.	404	'15. 9. 25. ~ '17. 8. 8.	
15	'Q 사'	-	'15. 11. 9.	372	'15. 11. 9. ~ '17. 8. 8.	
16	'R 사'	-	'15. 11. 9.	570	'15. 11. 9. ~ '17. 8. 8.	
17	'S 사'	-	'15. 11. 9.	1,671	'15. 11. 9. ~ '17. 8. 8.	
18	'T 사'	-	'15. 11. 30.	1,598	'15. 11. 30. ~ '17. 8. 8.	
19	'U 사'	-	'15. 12. 14.	4,210	'15. 12. 14. ~ '17. 8. 8.	
20	'V 사'	-	'16. 3. 14.	843	'16. 3. 14. ~ '17. 8. 8.	
21	'W 사'	-	'16. 3. 10.	2,746	'16. 3. 10. ~ '17. 8. 8.	
22	'X 사'	-	'16. 3. 30.	2,646	'16. 3. 30. ~ '17. 8. 8.	
23	'Y 사'	-	'16. 3. 30.	3,827	'16. 3. 30. ~ '17. 8. 8.	
24	'Z 사'	-	'16. 4. 14.	443	'16. 4. 14. ~ '17. 8. 8.	
25	'a 사'	-	'16. 4. 14.	4,592	'16. 4. 14. ~ '17. 8. 8.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26	'b 사'	-	'16. 4. 20.	964	'16. 4. 20. ~ 17. 8. 8.	
27	'c 사'	-	'16. 4. 20.	1,471	'16. 4. 20. ~ 17. 8. 8.	
28	'd 사'	-	'16. 4. 20.	1,062	'16. 4. 20. ~ 17. 8. 8.	
29	'e 사'	-	'16. 5. 11.	1,499	'16. 5. 11. ~ 17. 8. 8.	
30	'f 사'	-	'16. 6. 7.	960	'16. 6. 7. ~ 17. 8. 8.	
31	'g 사'	-	'16. 6. 14.	432	'16. 6. 14. ~ 17. 8. 8.	
32	'h 사'	-	'16. 8. 10.	555	'16. 8. 10. ~ 17. 8. 8.	
33	'I 사'	-	'16. 8. 10.	1,266	'16. 8. 10. ~ 17. 8. 8.	
34	'j 사'	-	'17. 2. 9.	441	'17. 2. 9. ~ 17. 8. 8.	
35	'k 사'	-	'17. 2. 13.	1,504	'17. 2. 13. ~ 17. 8. 8.	
36	'l 사'	-	'17. 2. 13.	883	'17. 2. 13. ~ 17. 8. 8.	

#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9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2017년 (2017. 8. )	주의요구 통보	-	-	2	

제 목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및 현장 이탈

## 【 지적내용 】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4. 8. 25. 'A사'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위례 지구A1-10BL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11. 24.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기간 '16. 11. 24.~'17. 8. 8., 금액 2,621백만원)에 대하여 'B사' (대표 '을')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 과 같이 총 36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술상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 제2항과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15.6.30) 제123조(건설기술자 관리 등)에 따르면 발주자(공사감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규정에 따른 공사 현장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C사’, ‘D사’, ‘E사’, ‘F사’ 등 4개 업체는 각각 해당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면서 시공관리,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해당 공종의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붙임 2]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현황’과 같이 타 공사 현장과 중복배치함으로써 기준보다 부족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하수급인 ‘C사’(병), ‘G사’(무), ‘F사’(정) 등의 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 3명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건 공사 현장을 이탈할 수 없는데도 아래 [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 당일 '17. 4. 7.(14:40~16:40)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다.

[표] 건설기술자 현장 이탈 현황

공사명	업체명	전문 공종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기술자 (자격종목)	건설기술자 배치신고기간	현장점검일	이탈사유
위례지구 A1-10BL 아파트 건설공사	‘C사’	미장공	724	'15.8.20. ~'16.12.6.	‘병’ (건축중급)	'16.7.1. ~'17.8.8.	'17.4.7.(금)	화성현장 근무
	‘G사’	내장	2,563	'16.3.30. ~'16.12.6.	‘무’ (건축고급)	'16.3.30. ~'17.8.8.	'17.4.7.(금)	연락두절
	‘F사’	유리	1,065	'15.4.20. ~'16.12.6.	‘정’ (건축고급)	'16.6.08. ~'17.8.8.	'17.4.7.(금)	증빙자료 없음

그리고 발주자(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현장 이탈 등에 해당되는 경우 하수급인의 대표자 및 해당 기술자에게 시정요구 하고 발주자에게 보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 그 결과 건설기술자가 타공사 현장에 중복배치되고 공사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해당 하도급공사의 시공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97조(벌칙) 제4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건설기술자의 공사현장 이탈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100조(벌칙) 제2호의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리고 발주자(공사감독자)의 건설기술자 관리 업무 소홀 행위는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23조(건설기술자 관리 등) 제1항 및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위반된 것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 조치할 사항 】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 건설기술자의 배치 부적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제1항을 위반한 하수급인 ‘C사’(대표 ‘기’), ‘D사’(대표 ‘경’), ‘E사’(대표 ‘진’), ‘F사’(대표 ‘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벌칙) 제4호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병’, ‘무’, ‘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벌칙)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건설기술자 배치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공사의 공사감독자 등 관계자에게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 신분상 조치

- 건설기술자 배치 부적정 등 감독 업무 소홀 공사감독자 신분상 ‘주의’ 조치

[붙임] 위례지구A1-10BL 아파트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C 사'	-	'14. 11. 24.	2,621	'14. 11. 24. ~ '17. 8. 8.	
2	'D 사'	-	'14. 12. 29.	1,604	'14. 12. 29. ~ '17. 8. 8.	
3	'E 사'	-	'15. 3. 12.	16,671	'15. 3. 12. ~ '17. 8. 8.	
4	'F 사'	-	'15. 3. 12.	19,340	'15. 3. 12. ~ '17. 8. 8.	
5	'G 사'	-	'15. 3. 12.	8,634	'15. 3. 12. ~ '17. 8. 8.	
6	'H 사'	-	'15. 4. 8.	7,584	'15. 4. 8. ~ '17. 8. 8.	
7	'I 사'	-	'15. 4. 8.	7,491	'15. 4. 8. ~ '17. 8. 8.	
8	'J 사'	-	'15. 4. 23.	370	'15. 4. 23. ~ '17. 8. 8.	
9	'K 사'	-	'15. 7. 17.	1,500	'15. 7. 17. ~ '17. 8. 8.	
10	'L 사'	-	'15. 7. 24.	747	'15. 7. 24. ~ '17. 8. 8.	
11	'M 사'	-	'15. 8. 20.	702	'15. 8. 20. ~ '17. 8. 8.	
12	'N 사'	-	'15. 8. 20.	644	'15. 8. 20. ~ '17. 8. 8.	
13	'O 사'	-	'15. 9. 7.	675	'15. 9. 7. ~ '17. 8. 8.	
14	'P 사'	-	'15. 9. 25.	404	'15. 9. 25. ~ '17. 8. 8.	
15	'Q 사'	-	'15. 11. 9.	372	'15. 11. 9. ~ '17. 8. 8.	
16	'R 사'	-	'15. 11. 9.	570	'15. 11. 9. ~ '17. 8. 8.	
17	'S 사'	-	'15. 11. 9.	1,671	'15. 11. 9. ~ '17. 8. 8.	
18	'T 사'	-	'15. 11. 30.	1,598	'15. 11. 30. ~ '17. 8. 8.	
19	'U 사'	-	'15. 12. 14.	4,210	'15. 12. 14. ~ '17. 8. 8.	
20	'V 사'	-	'16. 3. 14.	843	'16. 3. 14. ~ '17. 8. 8.	
21	'W 사'	-	'16. 3. 10.	2,746	'16. 3. 10. ~ '17. 8. 8.	
22	'X 사'	-	'16. 3. 30.	2,646	'16. 3. 30. ~ '17. 8. 8.	
23	'Y 사'	-	'16. 3. 30.	3,827	'16. 3. 30. ~ '17. 8. 8.	
24	'Z 사'	-	'16. 4. 14.	443	'16. 4. 14. ~ '17. 8. 8.	
25	'a 사'	-	'16. 4. 14.	4,592	'16. 4. 14. ~ '17. 8. 8.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26	'b 사'	-	'16. 4. 20.	964	'16. 4. 20. ~ 17. 8. 8.	
27	'c 사'	-	'16. 4. 20.	1,471	'16. 4. 20. ~ 17. 8. 8.	
28	'd 사'	-	'16. 4. 20.	1,062	'16. 4. 20. ~ 17. 8. 8.	
29	'e 사'	-	'16. 5. 11.	1,499	'16. 5. 11. ~ 17. 8. 8.	
30	'f 사'	-	'16. 6. 7.	960	'16. 6. 7. ~ 17. 8. 8.	
31	'g 사'	-	'16. 6. 14.	432	'16. 6. 14. ~ 17. 8. 8.	
32	'h 사'	-	'16. 8. 10.	555	'16. 8. 10. ~ 17. 8. 8.	
33	'I 사'	-	'16. 8. 10.	1,266	'16. 8. 10. ~ 17. 8. 8.	
34	'j 사'	-	'17. 2. 9.	441	'17. 2. 9. ~ 17. 8. 8.	
35	'k 사'	-	'17. 2. 13.	1,504	'17. 2. 13. ~ 17. 8. 8.	
36	'l 사'	-	'17. 2. 13.	883	'17. 2. 13. ~ 17. 8. 8.	



## [붙임 2]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현황

연번	공사명	소속업체 (대표)	공종	건설기술자	계약금액 (백만원)	기술자 배치기간	기술자 (자격종목)
1	위례지구 A1-10BL아파트건설공사	'C 사'	미장,방수,조적	'기'	644	2015.08.20.~ 2016.01.24.	건축기사
	홍성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					2015.04.01.~ 2015.11.15.	
	위례지구 A1-10BL아파트건설공사	'C 사'	미장,방수,조적	'기'	644	2016.07.01.~ 2017.08.08.	미장 기능사
	트리플스트리트 건설공사					2016.05.03.~ 2017.03.14.	
2	위례지구 A1-10BL아파트건설공사	'D 사'	미장,방수,조적	'경'	1,598	2015.11.30.~ 2017.08.08.	없음
	경기북부지역본부 복합사옥신축공사					2015.05.18.~ 2016.06.30.	
3	위례지구 A1-10BL아파트건설공사	'E 사'	미장,방수,조적	'신'	443	2016.04.14.~ 2017.08.08.	없음
	트리플스트리트 건설공사					2016.11.30.~ 2017.03.14.	
4	위례지구 A1-10BL아파트건설공사	'F 사'	금속구조물,창호	'임'	1,062	2016.04.20.~ 2016.06.07.	건축산업 기사
	강릉회산2지구아파트건설공사					2015.06.15.~ 2016.07.05.	
	위례지구 A1-10BL아파트건설공사	'F 사'	금속구조물,창호	'임'	1,062	2016.06.08.~ 2017.08.08.	건축산업 기사
	구미 강변 코오롱 하늘채 건설공사					2016.02.11.~ 2017.06.30.	

#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0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2017년 (2017. 7. )	주의요구	-	-	2	

제 목 설계 변경사항 미통보

## 【 지적내용 】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4. 8. 25. 'A사'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위례 지구A1-10BL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11. 24.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기간 '16. 11. 24.~'17. 8. 8., 금액 2,621백만원)에 대하여 'B사' (대표 '을')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 과 같이 총 36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6(공사금액 조정 사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등에 따르면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사금액의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금액 등을 하수급인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이 건 공사 진행중 수급인과 설계변경('16. 11. 7)을 하면서 하수급인에게 그 결과와 함께 공사금액 증액 등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1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붙임 2」 이 건 공사 설계변경사항 하수급인에게 미통보 현황' 과 같이 토공 및 가시설공사 등 25개 하수급인에게 조정 사유 및 금액 변경사항 등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감사 당일 '17. 4. 7.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하지 아니 하였다.

○ 그 결과 설계변경사항을 하수급인에게 미통보함으로써 투명성이 결여되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임의 적용 등 수급인의 우월적 지위에서 하도급 계약이 맺어지게 하는 등 하수급인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우려를 초래했다.

따라서 발주자(공사감독자)의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사항을 미통보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 것으로 공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설계변경을 하는 때에는 하수급인에게 설계변경 사항 통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공사장의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계자 등에게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설계변경사항 미통보 등 업무 소홀 공사감독자 신분상 '주의' 조치

[붙임] 위례지구A1-10BL 아파트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C 사'	-	'14. 11. 24.	2,621	'14. 11. 24. ~ '17. 8. 8.	
2	'D 사'	-	'14. 12. 29.	1,604	'14. 12. 29. ~ '17. 8. 8.	
3	'E 사'	-	'15. 3. 12.	16,671	'15. 3. 12. ~ '17. 8. 8.	
4	'F 사'	-	'15. 3. 12.	19,340	'15. 3. 12. ~ '17. 8. 8.	
5	'G 사'	-	'15. 3. 12.	8,634	'15. 3. 12. ~ '17. 8. 8.	
6	'H 사'	-	'15. 4. 8.	7,584	'15. 4. 8. ~ '17. 8. 8.	
7	'I 사'	-	'15. 4. 8.	7,491	'15. 4. 8. ~ '17. 8. 8.	
8	'J 사'	-	'15. 4. 23.	370	'15. 4. 23. ~ '17. 8. 8.	
9	'K 사'	-	'15. 7. 17.	1,500	'15. 7. 17. ~ '17. 8. 8.	
10	'L 사'	-	'15. 7. 24.	747	'15. 7. 24. ~ '17. 8. 8.	
11	'M 사'	-	'15. 8. 20.	702	'15. 8. 20. ~ '17. 8. 8.	
12	'N 사'	-	'15. 8. 20.	644	'15. 8. 20. ~ '17. 8. 8.	
13	'O 사'	-	'15. 9. 7.	675	'15. 9. 7. ~ '17. 8. 8.	
14	'P 사'	-	'15. 9. 25.	404	'15. 9. 25. ~ '17. 8. 8.	
15	'Q 사'	-	'15. 11. 9.	372	'15. 11. 9. ~ '17. 8. 8.	
16	'R 사'	-	'15. 11. 9.	570	'15. 11. 9. ~ '17. 8. 8.	
17	'S 사'	-	'15. 11. 9.	1,671	'15. 11. 9. ~ '17. 8. 8.	
18	'T 사'	-	'15. 11. 30.	1,598	'15. 11. 30. ~ '17. 8. 8.	
19	'U 사'	-	'15. 12. 14.	4,210	'15. 12. 14. ~ '17. 8. 8.	
20	'V 사'	-	'16. 3. 14.	843	'16. 3. 14. ~ '17. 8. 8.	
21	'W 사'	-	'16. 3. 10.	2,746	'16. 3. 10. ~ '17. 8. 8.	
22	'X 사'	-	'16. 3. 30.	2,646	'16. 3. 30. ~ '17. 8. 8.	
23	'Y 사'	-	'16. 3. 30.	3,827	'16. 3. 30. ~ '17. 8. 8.	
24	'Z 사'	-	'16. 4. 14.	443	'16. 4. 14. ~ '17. 8. 8.	
25	'a 사'	-	'16. 4. 14.	4,592	'16. 4. 14. ~ '17. 8. 8.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26	'b 사'	-	'16. 4. 20.	964	'16. 4. 20. ~ 17. 8. 8.	
27	'c 사'	-	'16. 4. 20.	1,471	'16. 4. 20. ~ 17. 8. 8.	
28	'd 사'	-	'16. 4. 20.	1,062	'16. 4. 20. ~ 17. 8. 8.	
29	'e 사'	-	'16. 5. 11.	1,499	'16. 5. 11. ~ 17. 8. 8.	
30	'f 사'	-	'16. 6. 7.	960	'16. 6. 7. ~ 17. 8. 8.	
31	'g 사'	-	'16. 6. 14.	432	'16. 6. 14. ~ 17. 8. 8.	
32	'h 사'	-	'16. 8. 10.	555	'16. 8. 10. ~ 17. 8. 8.	
33	'I 사'	-	'16. 8. 10.	1,266	'16. 8. 10. ~ 17. 8. 8.	
34	'j 사'	-	'17. 2. 9.	441	'17. 2. 9. ~ 17. 8. 8.	
35	'k 사'	-	'17. 2. 13.	1,504	'17. 2. 13. ~ 17. 8. 8.	
36	'l 사'	-	'17. 2. 13.	883	'17. 2. 13. ~ 17. 8. 8.	

[붙임 2] 위례지구A1-10BL 아파트 건설공사 설계변경사항 하수급인에게 미통보 현황

연번	공 종	건설업자	설계 변경일	하도급률(%)	비고
1	토공 및 가시설	'D 사	2016. 11. 07.	96.4	
2	철콘(1공구)	'E 사	2016. 11. 07.	111.7	
3	철콘(2공구)	'F 사	2016. 11. 07.	112.0	
4	철콘(3공구)	'G 사	2016. 11. 07.	109.2	
5	조립식육실	'H 사	2016. 11. 07.	88.4	
6	방수공사(1공구)	'I 사	2016. 11. 07.	82.1	
7	방수공사(2공구)	'J 사	2016. 11. 07.	89.2	
8	미장공사(1공구)	'K 사	2016. 11. 07.	85.7	
9	미장공사(2공구)	'L 사	2016. 11. 07.	86.4	
10	조적공사	'M 사	2016. 11. 07.	91.9	
11	도장공사	'N 사	2016. 11. 07.	82.1	
12	경량콘크리트	'O 사	2016. 11. 07.	100.6	
13	철물공사	'P 사	2016. 11. 07.	85.9	
14	내장공사(1공구)	'Q 사	2016. 11. 07.	88.0	
15	내장공사(3공구)	'R 사	2016. 11. 07.	90.3	
16	석공사	'S 사	2016. 11. 07.	84.7	
17	테라조타일공사	'T 사	2016. 11. 07.	82.2	
18	설비공사(2공구)	'U 사	2016. 11. 07.	89.0	
19	설비공사(1공구)	'V 사	2016. 11. 07.	87.9	
20	가스공사(1공구)	'W 사	2016. 11. 07.	92.2	
21	가스공사(2공구)	'X 사	2016. 11. 07.	89.8	
22	환기설비공사	'Y 사	2016. 11. 07.	97.0	
23	지열공사	'Z 사	2016. 11. 07.	127.9	
24	코킹공사	'a 사	2016. 11. 07.	83.9	
25	유리공사(1공구)	'b 사	2016. 11. 07.	98.8	

#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1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2017년 (2017. 7. )	통보 주의요구	-	-	2	

제 목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 없이 토사운반 계약 체결

## 【 지적내용 】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4. 8. 25. 'A사'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위례 지구A1-10BL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11. 24.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기간 '16. 11. 24.~'17. 8. 8., 금액 2,621백만원)에 대하여 'B사' (대표 '을')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 과 같이 총 36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건설기계대여업 포함)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포함)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건설기계대여업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건설인력기재과-1741호, '16. 5. 31.)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반출하는 토사를 운반하고 대가를 받기로 한

중간업체가 다시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한 덤프트럭 업자로 하여금 운반을 하도록 한 경우의 중간업체가 한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본인 소유의 자재 등을 판매 등의 이유가 아닌 경우”이므로 건설기계 대여업에 해당이 될 것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당사자는 임대료·임대차 기간·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주고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주자(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제4호(기성대가의 지급)의 (나)목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사실을 통보하고, 기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하도급) 제3호(하도급대금 등 지급확인) (다)목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지급내역을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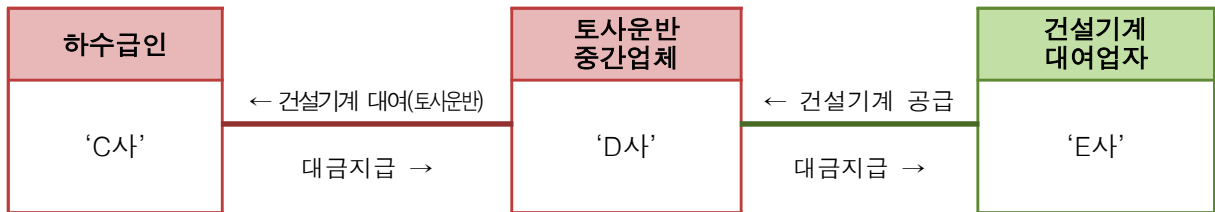
- '14. 11. 24. 수급인은 'C사' 대표 '병'(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이 건 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기간 '14. 11. 24. ~ '17. 8. 8. 금액 2,621백만원)하여 시공하게 하고 있으며, '15. 1. 2. 하수급인은 'D사' 대표 '정'(이하 '토사운반 중간업체'라 한다)과 이 건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 운반 계약(기간 '15. 1. 1. ~ '15. 8. 31., 금액 949백만원/1대당-13㎡기준,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록번호: 각종 25TON)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



○ 그런데 하수급인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함에도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직접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5. 1. 2.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토사운반 중간업체와 부적정하게 토사 운반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운반하게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토사운반 중간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종류 등)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과 이 건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한 토사 운반 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고, 이후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로 하여금 이 건 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하수급인으로 부터 당해 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15. 2. 27. ~ '17. 1. 23. 까지 총 89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그림] 건설기계 대여 관계도



또한 발주자(공사감독자)는 토사운반 중간업체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없이 '15. 2. 27. ~ '17. 1. 23. 까지 건설기계대여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하수급인에게 대여하고 「붙임 2」 토사운반비 지급 현황과 같이 토사 운반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으로 총 13차례에 걸쳐서 892백만원을 수령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 대금 수령내역 및 증빙서류 제출 요구 및 그에 대한 대금수령내역 비교·확인 의무를 '17. 4. 12. 감사당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 그 결과 하수급인과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업자(토사운반 중간업체)간 건설기계 임대차 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과 실질적인 건설기계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발생 및 그에 따른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대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수급인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직접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대여업 무등록업자와 토사운반 계약 체결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다

그리고 토사운반 중간업체의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없이 토사운반계약 및 건설기계대여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위반되어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벌칙) 제4호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발주자(공사감독자)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수령 내역 및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미확인 행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없이 건설기계 대여 행위를 한 토사운반 중간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하시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와 건설기계대여 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미체결에 대한 지적으로 계약대상자(당사자)들이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의 공사관계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들에게도 철저히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수령 내역 등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감독자 등 공사관계자들에게 철저히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 신분상 조치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미확인 등 업무 소홀 공사감독자 신분상 ‘주의’ 조치

[붙임] 위례지구A1-10BL 아파트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C 사'	-	'14. 11. 24.	2,621	'14. 11. 24. ~ '17. 8. 8.	
2	'D 사'	-	'14. 12. 29.	1,604	'14. 12. 29. ~ '17. 8. 8.	
3	'E 사'	-	'15. 3. 12.	16,671	'15. 3. 12. ~ '17. 8. 8.	
4	'F 사'	-	'15. 3. 12.	19,340	'15. 3. 12. ~ '17. 8. 8.	
5	'G 사'	-	'15. 3. 12.	8,634	'15. 3. 12. ~ '17. 8. 8.	
6	'H 사'	-	'15. 4. 8.	7,584	'15. 4. 8. ~ '17. 8. 8.	
7	'I 사'	-	'15. 4. 8.	7,491	'15. 4. 8. ~ '17. 8. 8.	
8	'J 사'	-	'15. 4. 23.	370	'15. 4. 23. ~ '17. 8. 8.	
9	'K 사'	-	'15. 7. 17.	1,500	'15. 7. 17. ~ '17. 8. 8.	
10	'L 사'	-	'15. 7. 24.	747	'15. 7. 24. ~ '17. 8. 8.	
11	'M 사'	-	'15. 8. 20.	702	'15. 8. 20. ~ '17. 8. 8.	
12	'N 사'	-	'15. 8. 20.	644	'15. 8. 20. ~ '17. 8. 8.	
13	'O 사'	-	'15. 9. 7.	675	'15. 9. 7. ~ '17. 8. 8.	
14	'P 사'	-	'15. 9. 25.	404	'15. 9. 25. ~ '17. 8. 8.	
15	'Q 사'	-	'15. 11. 9.	372	'15. 11. 9. ~ '17. 8. 8.	
16	'R 사'	-	'15. 11. 9.	570	'15. 11. 9. ~ '17. 8. 8.	
17	'S 사'	-	'15. 11. 9.	1,671	'15. 11. 9. ~ '17. 8. 8.	
18	'T 사'	-	'15. 11. 30.	1,598	'15. 11. 30. ~ '17. 8. 8.	
19	'U 사'	-	'15. 12. 14.	4,210	'15. 12. 14. ~ '17. 8. 8.	
20	'V 사'	-	'16. 3. 14.	843	'16. 3. 14. ~ '17. 8. 8.	
21	'W 사'	-	'16. 3. 10.	2,746	'16. 3. 10. ~ '17. 8. 8.	
22	'X 사'	-	'16. 3. 30.	2,646	'16. 3. 30. ~ '17. 8. 8.	
23	'Y 사'	-	'16. 3. 30.	3,827	'16. 3. 30. ~ '17. 8. 8.	
24	'Z 사'	-	'16. 4. 14.	443	'16. 4. 14. ~ '17. 8. 8.	
25	'a 사'	-	'16. 4. 14.	4,592	'16. 4. 14. ~ '17. 8. 8.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26	'b 사'	-	'16. 4. 20.	964	'16. 4. 20. ~ 17. 8. 8.	
27	'c 사'	-	'16. 4. 20.	1,471	'16. 4. 20. ~ 17. 8. 8.	
28	'd 사'	-	'16. 4. 20.	1,062	'16. 4. 20. ~ 17. 8. 8.	
29	'e 사'	-	'16. 5. 11.	1,499	'16. 5. 11. ~ 17. 8. 8.	
30	'f 사'	-	'16. 6. 7.	960	'16. 6. 7. ~ 17. 8. 8.	
31	'g 사'	-	'16. 6. 14.	432	'16. 6. 14. ~ 17. 8. 8.	
32	'h 사'	-	'16. 8. 10.	555	'16. 8. 10. ~ 17. 8. 8.	
33	'I 사'	-	'16. 8. 10.	1,266	'16. 8. 10. ~ 17. 8. 8.	
34	'j 사'	-	'17. 2. 9.	441	'17. 2. 9. ~ 17. 8. 8.	
35	'k 사'	-	'17. 2. 13.	1,504	'17. 2. 13. ~ 17. 8. 8.	
36	'l 사'	-	'17. 2. 13.	883	'17. 2. 13. ~ 17. 8. 8.	

[붙임 2] 토사운반비 지급 현황

연번	지급자	지급일	지급액(원)	지급처	대금 구분	건설기계
1	'C 사'	15.02.27	19,437,000	'D 사'	장비	덤프
2	'C 사'	15.03.26	365,796,000	'D 사'	장비	덤프
3	'C 사'	15.05.13	330,056,550	'D 사'	장비	덤프
4	'C 사'	15.06.05	54,390,900	'D 사'	장비	덤프
5	'C 사'	15.06.25	32,044,100	'D 사'	장비	덤프
6	'C 사'	15.07.17	28,124,800	'D 사'	장비	덤프
7	'C 사'	15.08.18	32,711,250	'D 사'	장비	덤프
8	'C 사'	15.09.16	6,160,000	'D 사'	장비	덤프
9	'C 사'	15.10.15	9,407,200	'D 사'	장비	덤프
10	'C 사'	15.11.13	2,728,000	'D 사'	장비	덤프
11	'C 사'	16.07.19	1,243,000	'D 사'	장비	덤프
12	'C 사'	16.12.22	6,688,000	'D 사'	장비	덤프
13	'C 사'	17.01.23	4,136,000	'D 사'	장비	덤프
	합계		892,922,800			

# 감사결과 처분요구

No. 12

부서·기관명	시행년도 (처분요구일)	처분요구 종류	재정상조치		신분상 조치인원	비고
			조치방법	금 액		
서울주택도시공사 (나부)	2017년 (2017. 7. )	통보 주의요구	-	-	3	

**제 목**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지적내용 】**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4. 8. 25. 'A사'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위례지구A1-10BL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11. 24.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기간 '16. 11. 24.~'17. 8. 8., 금액 2,621백만원)에 대하여 'B사' (대표 '을')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 과 같이 총 36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2항에 따르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료, 임대차 기간, 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 등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서로 주고 받은 후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들 중 'C사', 'D사', 'E사', 'F사' 등 4개 업체는 하도급 공사 중 건설기계 임대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사용하면서 「붙임 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현황과 같이 지게차 등 건설기계 18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작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15. 2. ~ '17. 1. 기간 동안 부적정하게 임차 사용하였다.

또한 발주자(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C사', 'D사', 'E사', 'F사')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감사 당일 '17. 4. 12. 까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그 결과 하수급인('C사', 'D사', 'E사', 'F사')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발생 및 그에 따른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대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수급인('C사', 'D사', 'E사', 'F사')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행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다.

발주자(공사관리관)의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미확인 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5 - 473호, '15.6.30)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②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교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과 제6항에 따르면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업자가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대여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C사', 'G사', 'D사', 'H사', 'F사')은 하도급 공사 중 건설기계 임대업자들로부터 건설기계를 임차하면서 '[붙임 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황'과 같이 불도저 등 21대에 대한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교부하지 아니하고 '15. 2. ~ '17. 1. 기간 동안 건설기계를 부적정하게 임차 사용하였다.

또한 발주자(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C사', 'G사', 'D사', 'H사', 'F사')들이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보증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 등을 감사 당일 '17. 4. 12. 까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 그 결과 하수급인('C사', 'G사', 'D사', 'H사', 'F사')과 건설기계 대여업자간 대여대금에 대한 분쟁 발생 및 그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대여대금이 보호 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하수급인('C사', 'G사', 'D사', 'H사', 'F사')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8호의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발주자(공사감독자)의 보증서 교부 여부 등 미확인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6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5-473호, '15.6.30))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규정 등에 위반된 것으로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조치할 사항】

###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미작성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하수급인 성우건설(주) 등 5개 업체에 대하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교육 등 계도하시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와 건설기계대여 업자간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미체결에 대한 지적으로 계약대상자(당사자)들이 과태료 부과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들에게도 철저히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를 미교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하수급인 ‘C사’ 등 5개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시정명령 등) 제4호 및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8호, 제91조(권한의 위임·위탁),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통보)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교부의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진행 중인 공사의 공사감독자 등 공사관계자에게 관련 법령을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미확인 등 업무 소홀 공사감독자 신분상 ‘주의’ 조치

[붙임] 위례지구A1-10BL 아파트건설공사 하도급 현황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1	'C 사'	-	'14. 11. 24.	2,621	'14. 11. 24. ~ '17. 8. 8.	
2	'D 사'	-	'14. 12. 29.	1,604	'14. 12. 29. ~ '17. 8. 8.	
3	'E 사'	-	'15. 3. 12.	16,671	'15. 3. 12. ~ '17. 8. 8.	
4	'F 사'	-	'15. 3. 12.	19,340	'15. 3. 12. ~ '17. 8. 8.	
5	'G 사'	-	'15. 3. 12.	8,634	'15. 3. 12. ~ '17. 8. 8.	
6	'H 사'	-	'15. 4. 8.	7,584	'15. 4. 8. ~ '17. 8. 8.	
7	'I 사'	-	'15. 4. 8.	7,491	'15. 4. 8. ~ '17. 8. 8.	
8	'J 사'	-	'15. 4. 23.	370	'15. 4. 23. ~ '17. 8. 8.	
9	'K 사'	-	'15. 7. 17.	1,500	'15. 7. 17. ~ '17. 8. 8.	
10	'L 사'	-	'15. 7. 24.	747	'15. 7. 24. ~ '17. 8. 8.	
11	'M 사'	-	'15. 8. 20.	702	'15. 8. 20. ~ '17. 8. 8.	
12	'N 사'	-	'15. 8. 20.	644	'15. 8. 20. ~ '17. 8. 8.	
13	'O 사'	-	'15. 9. 7.	675	'15. 9. 7. ~ '17. 8. 8.	
14	'P 사'	-	'15. 9. 25.	404	'15. 9. 25. ~ '17. 8. 8.	
15	'Q 사'	-	'15. 11. 9.	372	'15. 11. 9. ~ '17. 8. 8.	
16	'R 사'	-	'15. 11. 9.	570	'15. 11. 9. ~ '17. 8. 8.	
17	'S 사'	-	'15. 11. 9.	1,671	'15. 11. 9. ~ '17. 8. 8.	
18	'T 사'	-	'15. 11. 30.	1,598	'15. 11. 30. ~ '17. 8. 8.	
19	'U 사'	-	'15. 12. 14.	4,210	'15. 12. 14. ~ '17. 8. 8.	
20	'V 사'	-	'16. 3. 14.	843	'16. 3. 14. ~ '17. 8. 8.	
21	'W 사'	-	'16. 3. 10.	2,746	'16. 3. 10. ~ '17. 8. 8.	
22	'X 사'	-	'16. 3. 30.	2,646	'16. 3. 30. ~ '17. 8. 8.	
23	'Y 사'	-	'16. 3. 30.	3,827	'16. 3. 30. ~ '17. 8. 8.	
24	'Z 사'	-	'16. 4. 14.	443	'16. 4. 14. ~ '17. 8. 8.	
25	'a 사'	-	'16. 4. 14.	4,592	'16. 4. 14. ~ '17. 8. 8.	

연번	하도급업체명	대표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백만원)	공사기간	비고
26	'b 사'	-	'16. 4. 20.	964	'16. 4. 20. ~ 17. 8. 8.	
27	'c 사'	-	'16. 4. 20.	1,471	'16. 4. 20. ~ 17. 8. 8.	
28	'd 사'	-	'16. 4. 20.	1,062	'16. 4. 20. ~ 17. 8. 8.	
29	'e 사'	-	'16. 5. 11.	1,499	'16. 5. 11. ~ 17. 8. 8.	
30	'f 사'	-	'16. 6. 7.	960	'16. 6. 7. ~ 17. 8. 8.	
31	'g 사'	-	'16. 6. 14.	432	'16. 6. 14. ~ 17. 8. 8.	
32	'h 사'	-	'16. 8. 10.	555	'16. 8. 10. ~ 17. 8. 8.	
33	'I 사'	-	'16. 8. 10.	1,266	'16. 8. 10. ~ 17. 8. 8.	
34	'j 사'	-	'17. 2. 9.	441	'17. 2. 9. ~ 17. 8. 8.	
35	'k 사'	-	'17. 2. 13.	1,504	'17. 2. 13. ~ 17. 8. 8.	
36	'l 사'	-	'17. 2. 13.	883	'17. 2. 13. ~ 17. 8. 8.	

[붙임 2]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현황

연번	건설 기계명	등록번호	건설업자	대여업자	임차기간	대여금액 (단위:천원)	담당
1	불도저	서울01가7374	'C 사'	태성건설	2016.12	8,250	토목
2	불도저	서울01가7176	'C 사'	선봉건설	2016.11	10,175	토목
3	굴삭기	06LC충남02로8393	'D 사'	(주)태성건설기계	2015.01	7,150	건축
4	로더	서울03나8999	'D 사'	서울동산중기	2015.02	5,142	건축
5	굴삭기	06LC충남02로8393	'D 사'	(주)태성건설기계	2015.02	7,150	건축
6	굴삭기	06LC충남02로8393	'D 사'	(주)태성건설기계	2015.03	7,150	건축
7	컴프레샤	21가6192	'D 사'	한양컴푸	2015.03	8,800	건축
8	로더	서울03나8999	'D 사'	서울동산중기	2015.03	6,050	건축
9	굴삭기	03LC02파6787	'D 사'	기현중기	2015.04	5,610	건축
10	굴삭기	02인천02바8673	'D 사'	왕진중기	2015.06	10,135	건축
11	로더	서울03나8999	'D 사'	서울동산중기	2015.06	22,775	건축
12	굴삭기	02인천02바8673	'D 사'	왕진중기	2015.09	4,845	건축
13	지게차	대전03나6786	'E 사'	진보중기	2016.05.	1,144	건축
14	굴삭기	03LC02파6787	'D 사'	기현중기	2015.06	3,330	건축
15	지게차	서울04나8642호	'F 사'	서울동산중기	2016.11	3,190	건축
16	지게차	서울04나7061호	'F 사'	서울동산중기	2016.12	2,310	건축
17	지게차	서울04나6777호	'F 사'	서울동산중기	2017.01	2,134	건축
18	지게차	대전03나6786	'F 사'	진보중기	2017.01	2,090	건축

[붙임 3]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서 미발급 현황

연번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건설업자	대여업자	임차기간	대여금액 (단위:천원)	담당
1	불도저	서울01가7374	'C 사'	태성건설	2016.12	8,250	토목
2	불도저	서울01가7176	'C 사'	선봉건설	2016.11	10,175	토목
3	펌프카	서울15가6763	'E 사'	보원중기	2016.12	9,020	건축
4	펌프카	서울15가6763	'E 사'	보원중기	2016.07	11,770	건축
5	로더	서울03나8999	'E 사'	서울동산중기	2016.07	6,028	건축
6	굴삭기	06LC충남02로8393	'D 사'	(주)태성건설기계	2015.01	7,150	건축
7	로더	서울03나8999	'D 사'	서울동산중기	2015.02	5,142	건축
8	굴삭기	06LC충남02로8393	'D 사'	(주)태성건설기계	2015.02	7,150	건축
9	굴삭기	06LC충남02로8393	'D 사'	(주)태성건설기계	2015.03	7,150	건축
10	컴프레샤	21가6192	'D 사'	한양컴푸	2015.03	8,800	건축
11	로더	서울03나8999	'D 사'	서울동산중기	2015.03	6,050	건축
12	굴삭기	03LC 02파6787	'D 사'	기현중기	2015.04	5,610	건축
13	굴삭기	03LC 02파6787	'D 사'	기현중기	2015.06	3,330	건축
14	굴삭기	02인천02바8673	'D 사'	왕진중기	2015.06	10,135	건축
15	로더	서울03나8999	'D 사'	서울동산중기	2015.06	22,775	건축
16	굴삭기	02인천02바8673	'D 사'	왕진중기	2015.09	4,845	건축
17	크레인	서울07가8529	'G 사'	천룡건기	2015.11	7,436	건축
18	지게차	서울04나8642호	'F 사'	서울동산중기	2016.11	3,190	건축
19	지게차	서울04나7061호	'F 사'	서울동산중기	2016.12	2,310	건축
20	지게차	서울04나6777호	'F 사'	서울동산중기	2017.01	2,134	건축
21	지게차	대전03나6786	'F 사'	진보중기	2017.01	2,090	건축

# 현 지 시 정

(No. 1)			
관련기관(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가부)			
지적일시	2017. 4. 5.	감사자	
제 목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		
<p><b>【 지적내용 】</b></p> <p>○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01. 12. 28. 'A사'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5. 12. 14. 'A사'가 이 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16. 1. 28. 보증이행사 'B사'(대표 갑)(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p> <p>'02. 12. 30. 'C사'(대표 을)과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기간 '02. 12. 31. ~ '19. 12. 31., 금액 9,359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p> <p>한편, 수급인은 '16. 2. 6.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기간 '16. 2. 6.~'16. 4. 30., 금액 3,949백만원)에 대하여 'D사'(대표 병)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과 같이 총 25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p> <p>○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이하 '근로계약서')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p> <p>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p> <p>○ 그런데 이 건 공사의 하수급인 'G사'과 'H사'은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p>			

하고 부적정하게 근로자를 사용하였다.

[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의무 불이행 현황(13건)

연번	사업주 (하수급인)	근로자명	실제 근무 기간	임금 (단위:원)
1	'G 사'	'갑'	17.02.01~17.02.03	300,000
2		'을'	17.02.01~17.02.03	300,000
3		'병'	17.02.01~17.02.03	300,000
4	'H 사'	'정'	16.11.29~16.12.15	1,200,000
5		'무'	16.11.29	100,000
6		'기'	16.12.07	100,000
7		'경'	16.11.29~16.11.30, 16.12.07~16.12.15	800,000
8		'신'	16.11.30 16.12.07~16.12.09, 16.12.14~16.12.15	600,000
9		'임'	16.12.08, 16.12.14~16.12.15	300,000
10		'계'	16.11.29~16.12.15	1,200,000
11		'갑'	16.11.29	100,000
12		'을'	16.11.29~16.11.30 16.12.09~16.12.15	1,000,000
13		'병'	16.11.29	100,000

○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근로계약 존재여부, 임금액, 산재보상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되며, 공사(하도급) 대금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경로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저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하수급인 'G사'와 'H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지도·교육하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지적으로 건설업자들이 벌금 부과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장의 공사관계자들에게도 철저히 지도·교육하기 바랍니다.

처분요구

# 현 지 시 정

(No. 2)			
관련기관(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가부)			
지적일시	2017. 4. 5.	감사자	
제 목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 부적정		
<p><b>【 지적내용 】</b></p> <p>○ 도시기반시설본부(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01. 12. 28. 'A사'와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4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15. 12. 14. 'A사'가 이 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16. 1. 28. 보증이행사 'B사'(대표 갑)(이하 '수급인' 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다.</p> <p>'02. 12. 30. 'C사'(대표 을)과 이 건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기간 '02. 12. 31. ~ '19. 12. 31., 금액 9,359백만원)을 체결하고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p> <p>한편, 수급인은 '16. 2. 6.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기간 '16. 2. 6.~'16. 4. 30., 금액 3,949백만원)에 대하여 'D사'(대표 병)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과 같이 총 25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p> <p>○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19)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제7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공사관리관)는 현장 인명부 등을 통해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p> <p>그리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p>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지급확인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수급인은 '16. 4. ~ '17. 1. 기간 동안 상수도 이설 하도급공사의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42백만원 지급 등 총 12건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하여 지급하면서 장비비, 자재비, 노무비를 구분하여 각각의 항목별로 구분 지급하지 아니하고 총 12차례에 걸쳐 하도급 대금 등으로 부적정하게 일괄 지급하였다.

**[표] 하수급인 대금지급시 대금e바로시스템 항목 미구분 사용현황(12건)**

연번	지급자 (수급인)	하도급업체 (하수급인)	지급일자	지급구분	금액 (단위:원)	실제내역
1	‘B 사’	‘C 사’	2017.01.12	하도급대금	19,680,030	장비/자재/노무
2		‘D 사’	2017.01.16	하도급대금	42,640,080	장비/자재/노무
3		‘E 사’	2016.05.16	하도급대금	10,933,350	장비/자재/노무
4		‘F 사’	2016.09.28	하도급대금	100,586,820	장비/자재/노무
5		‘G 사’	2016.07.13	하도급대금	42,640,080	장비/자재/노무
6		‘H 사’	2016.06.15	하도급대금	54,666,750	장비/자재/노무
7		‘I 사’	2016.04.25	하도급대금	250,373,730	장비/자재/노무
8		‘J 사’	2016.10.12	하도급대금	66,693,450	장비/자재/노무
9		‘K 사’	2016.09.12	하도급대금	18,586,710	장비/자재/노무
10		‘L 사’	2016.05.13	하도급대금	95,120,160	장비/자재/노무
11		‘M 사’	2016.05.13	하도급대금	14,213,370	장비/자재/노무
12		‘N 사’	2016.06.20	노무비	18,883,635	장비/자재/노무

그리고 발주자(공사관리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 1.19)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제7호(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및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지급확인시스템의 적용 등) 규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적절하게 구분 지급되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등을 하여 바로잡지 아니하는 등 대금e바로시스템 지급·확인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하수급인과 장비업자·자재업자·근로자간 대금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무비나 장비대여 대금 등에 대한 지급을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공사(하도급) 대금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경로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저해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 앞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부적정하게 일괄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진행중인 공사의 공사관리관에게 대금e바로시스템 상의 공사대금 지급·확인 업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 등)에 대한 교육실시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처분요구**

# 현 지 시 정

(No. 3)			
관련기관(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나부)			
지적일시	2017. 4. 12.	감사자	
제 목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		
<p><b>【 지적내용 】</b></p> <p>○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4. 8. 25. 'A사'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위례지구A1-10BL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다.</p> <p>한편, 수급인은 '16. 11. 24.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기간 '16. 11. 24.~'17. 8. 8., 금액 2,621백만원)에 대하여 'B사' (대표 '을')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 과 같이 총 36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p> <p>○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를 명시한 서면(이하 '근로계약서')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p> <p>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따르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p> <p>○ 그런데 하수급인 'C사'(대표 '병') 등 2개 업체는 이 건 공사의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없이 부적정하게 근로자를 사용하였다.</p>			

[표]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의무 불이행 현황(20건)

연번	사업주 (하수급인)	근로자명	실제 근무 기간	임금 (단위:원)
1	'C 사'	-	2017.2.1~2.28.(20일)	3,660,000
2		-	2017.2.1~2.28.(20)	3,660,000
3		-	2017.2.1~2.28.(15.5)	2,480,000
4		-	2017.2.1~2.28.(13)	2,860,000
5		-	2017.2.1~2.28.(15.5)	2,480,000
6		-	2017.2.1~2.28.(18)	3,060,000
7		-	2017.2.1~2.28.(16)	2,480,000
8		-	2017.2.1~2.28.(16)	2,080,000
9		-	2017.2.1~2.28.(20)	3,400,000
10		-	2017.2.1~2.28.(21)	4,200,000
11	'D 사'	-	2017.2.1~2.28.(15.5)	2,480,000
12		-	2017.2.1~2.28.(20)	2,360,000
13		-	2017.2.1~2.28.(10)	2,000,000
14		-	2017.2.1~2.28.(20.5)	3,280,000
15		-	2017.2.1~2.28.(20)	3,400,000
16		-	2017.2.1~2.28.(20)	3,060,000
17		-	2017.2.1~2.28.(16)	2,080,000
18		-	2017.2.1~2.28.(20)	5,080,000
19		-	17.02.01~17.02.28(28일)	3,000,000
20		-	17.02.01~17.02.28(28일)	8,900,000

○ 그 결과 하수급인과 근로자간 근로계약 존재여부, 임금액, 산재보상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되며, 공사(하도급) 대금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 경로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저해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하수급인 'C사'(대표 '병') 등 2개 업체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에 해당된다

처분요구	<p><b>【조치할 사항】</b></p> <p>○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수급인들로 하여금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지도·교육하시기 바라며, 특히 앞으로 건설업자(수급인, 하수급인)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지적으로 건설업자들이 벌금 부과 조치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중인 모든 건설공사의 공사관계자들에게도 철저히 지도·교육하기 바랍니다.</li> </ul>
------	--

# 현 지 시 정

(No. 4)

관련기관(부서) : 서울주택도시공사(나부)

지적일시	2017. 4. 5.	감사자	
제 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확인 지연		

**【 지적내용 】**

○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14. 8. 25. 'A사' 대표 '갑'(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도급계약(기간 '16. 1. 28. ~ '17. 12. 31., 금액 174,152백만원)을 체결하여 “위 레지구A1-10BL 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건 공사의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게 하고 있다.

한편, 수급인은 '16. 11. 24. 이 건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기간 '16. 11. 24.~'17. 8. 8., 금액 2,621백만원)에 대하여 'B사' (대표 '을')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붙임] 이 건 공사 하도급 현황' 과 같이 총 36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르면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사개요, 계약 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행상황 등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공사 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 운영)”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국토교통부 지침, '16. 9.)」에 따르면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수급인·하수급인으로 부터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된 건설공사대장(기재사항 등) 통보기한 준수 여부 및 통보내용의 정확 여부를 주기적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수급인 등이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에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수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 발주자(공사감독자)는 아래 [표]와 같이 수급인이 통보한 3건의 건설공사 통보 내용을 29일 내지 90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여 확인하였다.

[표]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및 확인내역

공사명	업체명	계약일	통보일	확인일자	확인지연
위례A1-10BL 아파트건축공사	'C 사'	'15.9.25	'16.5.24	'16.8.18	90일
	'D 사'	'15.7.24	'17.1.17	'17.3.24	59일
	'E 사'	'16.4.20	'17.2.17	'17.3.24	29일

- 그 결과 발주자(공사감독자)가 건설공사대장 기재·통보사항을 지연 확인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발주자(공사감독자)의 건설공사대장(기재사항 등) 지연 행위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조치요령(국토교통부지침, '16. 9.)」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15-473호, '15. 6. 30.)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의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확인·점검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p><b>처분요구</b></p>	<p><b>【조치할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앞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통보사항 지연 확인 등으로 지적되는 없도록 모든 진행중인 공사의 공사감독자 및 공사관계자들에게 건설공사대장 통보내용의 확인 업무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ul>
--------------------	---